

물리적 억제 도구를 사용해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물리적 억제 도구는 결코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5장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의사의 제한된 역할

수용자들이 특정 유형의 처벌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 의사의 역할은 민감한 것이다. 이것은 4장에 다루어져 있다. 최저 기준 규칙(32)은 의무관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불리할 수도 있는 처벌을 받게 될 모든 수용자들을 검사해야 하며 그들이 이러한 처벌을 견디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후 상황에서 살펴보면 이 규정은 그러한 처벌을 견디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용자는 결코 그러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은 처벌할 때 의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수용자들과 피구금자들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건강관리 요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윤리적 원칙'에 포함된 규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건강관리 요원, 특히 의사가 수용자나 피구금자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평가하거나 보호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목적으로 직업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다.

비공식적 처벌은 불가

수용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처벌은 규율 위반에 대한 공식 심리에 따르는 처벌뿐이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직원들이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의 비공식적 처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위 관리자들은 이 점에 대해 특히 경계를 해야 한다.

독방 수용

국제 법률 문서는 독방 수용은 가장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처벌이 아니라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이 방법의 사용을 피해야 하고 이것을 폐지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률 문서들은 독방 수용 기간은 수용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표현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7

처벌 방법으로서의 독방 수용을 폐지하거나 이 방법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야하고 그러한 노력을 권장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1

체벌, 어두운 감방에 감금하는 처벌, 그 밖의 모든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처벌은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는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유럽 교도소 규정, 규정 37

집단 처벌, 체벌, 독방에 감금하는 처벌, 그 밖의 모든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처벌은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는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유럽 교도소 규정, 규정 38(1)

징계로 감금을 하는 처벌은 … 의무관이 검사 후 해당 수용자가 그것을 견디기에 적합하다고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유럽 교도소 규정, 규정 38(3)

의무관은 그러한 처벌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을 매일 방문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이유로 처벌의 종결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실천 방법

감각의 차단과 어두운 감방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독방 수용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개인이 완전히 혼자 감금되어 있고 이를 바 '암흑 감방'에서 광선, 소리, 신선한 공기 등의 결여로 감각이 차단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의 격리 상황은 처벌 수단으로 부과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소수의 수용자 집단을 그러한 상황 속에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있어야 한다.

1983년의 한 판결문에서 유럽 인권 위원회는 그러한 감금의 결과에 대해 아주 명확히 단언했다.

… 완전한 사회적 고립과 완벽한 감각적 고립은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보안의 필요성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처우 형태이다.

[응용 No. 843/78 (1983)] 크뢰허와 뮐러 대(對) 스위스 사건, para 62]

매일 점검

또 다른 형태의 독방 수용 상황으로는 수용자가 정상적 광선과 공기가 통하는 독방에 감금되고 인근 구역에서 수용자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처벌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단기간 동안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항상 의사가 수용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매일 수용자를 주의깊게 점검해야 한다. 수용자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처벌이 종결되어야 한다.

독방 수용의 위험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CPT)는 독방 수용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의 적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독방 수용 상태는 비인도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처우에 해당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형태의 독방 수용 상태는 가능한 한 단기간이어야 한다.

(CPT, CPT 활동에 대한 2차 일반 보고서, para 56)

대표단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상황에 있었고 활동의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겸소한 구금 상황에 있었던 1급 수용자들을 만났다. CPT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바로 비인도적 처우이다.

(CPT, 1991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 처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위원회가 스페인을 방문한 후 스페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CPT/Inf(96) 9 Part 1, para 113)

독방 수용과 중구금 보안 조치

어떤 국가들에서는 초(超) 중구금 보안 조치 양식의 일부로 오랜 기간이나 무기한 동안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독방 수용 조치를 점차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위험은 5 장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 있다.

7

건설적 활동과 사회 재통합

체제

수용자들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인간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형벌이다. 수감 상황은 그 자체로 권리의 가혹한 박탈이므로 이것은 명확히 규정된 상황 속에서 사법 당국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가 있다. 이 지침서에서는 교도소 당국이 수용자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법원의 처벌을 증대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와 반대로 교도소 당국은 교도소의 관리 아래 맡겨진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교도소 당국이 수용자들을 인도적으로 품위 있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국은 교도소의 관리 아래 맡겨진 수용자들에게 변화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상당한 기술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사회의 주변 계층 출신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 중 다수는 극빈층이나 봉괴된 가정 출신이다. 이들 중 실업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고 교육 수준은 낮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떠돌며 살았던 사람들을 것이고 정당한 사회적 교제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점들을 지난 사람들의 인생 전망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활동을 제공할 책임

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건설적 활동의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적어도 교도소에 다녀 온 경험 때문에 수용자들이 처음 형기를 복역하기 시작할 때보다 더 악화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경험이 그들이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지적, 사회적 역할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국제 법률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0조 3항

교정 체제에는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적 교화 개선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65-66

65 수감이나 그와 유사한 조치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그 복역 기간이 허용하는 한 그들의 마음 속에 석방 후 법을 준수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지를 심어주는 것과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66 (1)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적절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들로는 종교적 지도가 가능한 국가들에서는 종교적 지도, 교육, 직업 지도와 훈련, 사회 복지 사업으로서의 생활 환경 조사, 취업 상담, 신체 발달, 도덕성의 강화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각 수용자의 사회적 경력과 범죄 경력,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적성, 개인적 기질, 형기(刑期), 석방 후의 전망 등을 참작하고 각자의 개별적 필요성에 맞추어서 활용되어야 한다.
- (2) 교도소장은 적절한 기간의 형기를 선고받은 모든 수용자에 대해 그의 입소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향에 언급된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항상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무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무관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정신의학의 지식을 갖춘 인물이 채용되어야 한다.
- (3) 이러한 보고서와 다른 관계 서류들은 개별 파일로 보관되어야 한다. 이 파일에는 항상 최근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담당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잘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실천 방법

수용자들을 석방 후의 생활에 대비시키기

교화 개선이 된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수용자가 아니라 석방 후 교도소 밖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수용자이다. 교도소 당국이 교도소 내 활동 프로그램 중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에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적 교화 개선"이라고 설명된 조항에 우선권을 부여하려면 당국은 수용자들에게 교도소 밖에서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법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하는 일을 교도소 밖에서의 취업 가능성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과자가 일자리를 찾으려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차별 대우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바깥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교도소 내에서 배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석방된 후 정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지도록 지원하는 어떤 형태의 사회 조직을 구성하려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사회의 조직을 활용하기

위의 제안들 중 어떤 것도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국가들이나 주에서 심한 과밀 현상, 교육받은 교도소 직원의 부족, 교도소 밖의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결여, 수용자들이 교도소를 떠날 때 외부 사회에서 받는 적대적 대우 등의 상황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이 장에 명시된 원칙들은 교도 행정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라도 노력해서 달성을 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교도 행정

당국은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반 사회나 지역 사회의 교육 기관들과 협력을 맺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모리셔스에서는 정부의 교정 담당 각료가 수용자의 사회 복귀 기회를 증대시키고 특히 서로를 잘 아는 소규모 사회에서 전과자에게 편견을 퇴치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를 대중매체에 개방하는 주간을 설정해서 기자들로 하여금 수용자들이 석방 후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해 수용자와 교도소 직원과 인터뷰하도록 권장하고 사회가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도록 장려했다.

수용자를 개인으로 인식하기

교도소 내의 활동 프로그램이 소기의 효과를 내려면 각 수용자를 가능한 한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수용자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거나 발전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능률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문맹인 수용자도 있는 반면에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교사였던 수용자도 있을 것이다. 거리를 방황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강한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되돌아갈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교화 개선 활동을 준비하고 수용자들을 각 활동 분야를 배정할 때에는 수용자의 배경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67-69

- 67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그들의 범죄 기록이나 나쁜 성격 때문에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들을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분리시킨다.
 - 수용자들의 사회적 교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들을 여러 학급으로 분리시킨다.

- 68 가능한 한 각각 다른 학급의 수용자들을 관리할 때 별도의 기관이나 같은 기관내의 별도의 구역을 이용한다.

- 69 입소한 후 적절한 기간의 형기를 선고받은 각 수용자의 성격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그의 개별적 필요, 능력, 성향 등에 비추어 그를 위한 적절한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개인의 발전을 강조

교도소에 입소하는 각 개인은 전의 인생 경험이 있고 거의 모든 수용자들이 언젠가는 석방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교도소 안에서 얻은 경험이 석방 후의 생활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도소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시설들을 수용자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수용자들에게 놀지 않고 할 일을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은 또한 목적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활동은 농사든 읽기를 배우는 일이든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든 수용자들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그들이 석방될 때 도움이 될 새로운 적성을 개발하는 풍토에 기여하도록 계획이 되어야 한다.

단기형을 선고받은 수용자

단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들에게는 유용한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족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작업과 기술 교육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수용자가 석방된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수용자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직업 기술을 개발하고 규칙적 작업을 할 최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수용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주된 목적은 교도 행정 당국이 돈을 벌거나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될 때 정상적으로 일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취업은 사회 복귀에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 복귀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사회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외부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중요한 방법들은 8 장에 다루어져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8 조

- 3 (a) 그 누구도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 (b) 3 항 (a)를 중노동을 수반하는 수감 생활을 범죄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국가들에서 관할 법정이 내린 그러한 처벌에 대한 선고에 따라 중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배제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 (c) 이 항에서 의도한 바로는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노동”이라는 용어

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않은 작업이나 용역이지만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 구금 중인 사람이나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로 석방된 사람에게 통상 요구되는 작업이나 용역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8

수용자들이 해당 국가의 노동 시장에 소속되는 것을 쉽게 해주고 그들 자신과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71

- (1) 교도소 내 노동은 고통을 주는 성격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 (2) 복역 중인 모든 수용자들은 의무관이 결정하는 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 (3) 수용자들이 하루의 정상적 법정 노동 시간에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용한 성격의 충분한 작업량이 제공되어야 한다.
- (4) 가능한 한 제공되는 작업은 수용자가 석방 후 정직하게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대시켜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5) 유용한 직종에 대한 직업 교육이 그러한 교육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용자, 특히 청소년 수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6) 적절한 직업 선택과 교도소의 행정과 규율상의 요건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72

- (1) 교도소 내 작업의 조직과 방법은, 수용자들이 정상적 직업 생활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도소 밖의 유사한 작업의 조직이나 방법과 가능한 한 비슷해야 한다.
- (2) 그러나 수용자들의 이익과 그들의 직업 교육은 교도소 내 사업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73

- (1) 교도소 부속 사업체나 농장은 민간 하청업자들이 아니라 교도소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수용자들이 당국이 관리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항상 교도소 직원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 해당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수용자들의 생산량을 확인해서 그러한 작업에 대한 정상적 급료를 교도소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 (1) 일반 사회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명시된 주의 사항은 교도소에서도 동등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 (2) 법적으로 일반 사회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수용자들을 직업병 등 산업 재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수용자들의 하루 최대 노동 시간과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일반 사회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해당 지역의 규정이나 관습을 고려하여 법이나 교도소 운영 규정으로 정해져야 한다.
- (2) 이렇게 정해진 노동 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용자의 처우와 사회 복귀 훈련의 일부로 요구되는 교육과 다른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수용자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 체계가 있어야 한다.
- (2) 이 보수 체계에 따라 수용자들은 적어도 그들의 수입의 일부를 구매가 허용된 개인용 물품의 구입에 지출하거나 수입의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 (3) 이 체계에 따라 수입의 일부는 수용자가 석방될 때 지급할 저축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교도소 당국이 따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노동의 가치

수용자들은 나날을 할 일 없이 단조롭게 보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 복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할 일이 없는 수용자는 침울하고 파괴적이 되기 쉽다. 이것은 이 지침서의 5 장에 설명된 역동적 보안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제공하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공정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합법적인 형태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된다. 이것은 또 그들이 정규적 직장 생활의 경험이 없어서 매일 규칙적인 체계에 따라 작업하는 데 필요한 규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정규 직장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작업 환경

의무적이거나 강제적 노동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문서들에는 수용자들이 하는 작업이 자동적으로 그러한 범주에 속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은 일정한 안전 장치만 준수된다면, 작업을 해야 하는 수도

있다. 그러한 안전 장치는 다음과 같다.

- 그 작업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 그 작업은 그들이 석방 후 유용하게 사용할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수용자들은 그들이 하는 작업에 대해 보수를 지급 받아야 한다.
- 작업 환경은 특히 위생과 안전 요건의 면에서 일반 시민의 작업장 환경과 대체로 비슷해야 한다.
- 작업 시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아야 하며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남겨주어야 한다.

일과의 개발

교도소의 작업에는 두 가지 주요한 목표가 있다. 첫째 목표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가서 매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일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는 규칙적 일과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용자들로 하여금 매일 단조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작업을 하려면 작업장에 나가도록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행을 보여주는 최악의 예로 19세기에 수용자들에게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모래가 든 거대한 원통을 돌리게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현대에도 이러한 유형의 무의미한 작업을 부과하는 예가 많다.

기술의 개발

작업의 또 하나의 목표는 수용자들에게 목적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형기를 마치고 난 후 직장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교도소의 작업이 수용자들에게 작업 기술을 습득시키는 훈련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면 그들은 건설, 공학, 관리, 농업 등의 전통적 직업 분야에서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컴퓨터 작업 같은 최신 기술을 훈련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업 훈련은 청소년 수용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수용자가 복귀할 지역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특히 중요하다.

여성 수용자

여성 수용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항들은 13장에 다루어져 있다. 여성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바느질이나 수공예 같은 활동반 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공할 작업을 찾는 방법

많은 국가에서는 교도 행정 당국은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충분한 양의 작업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국가들이나 주에서는 정부의 다른 부서들이 일정한 종류의 작업을 교도 행정 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작업은 정부 내의 하청 계약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서는 정부 기관의 모든 사무용 가구는 수용자들이 만들고 있다. 또 자동차 번호판의 제작 등 외부 기관을 위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교도소 직원들이 수용자들을 위해 목적 있는 작업을 찾아내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용자들을 선발해서 교도소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직원들과 협력해서 수행함으로써 유용한 기술을 배우게 할 수도 있다. 교도소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용자들은 감독을 받으며 그 토지를 경작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식량을 생산할 수도 있다. 수용자들은 또 취사나 세탁 등 꼭 필요한 일상적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다.

수용자들이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정부 기구나 비정부 기구가 수행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면 노숙자 숙박소의 가구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고아원에 장난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일인 사업체나 작은 협동 조합을 혼자 경영하는 일은 교도소를 출소하는 어떤 수용자들에게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용자들은 이미 가진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켜서 일반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도 있다. 석방 후에도 꾸준히 그러한 작업을 한다면 전과자라고 해서 취업상 차별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용자들에게 작업을 제공하는 데 민간 상공업체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들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의 원천으로 이용되거나 해당 지역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도록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일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들은 그들의 작업에 대해 충분한 임금을 지불받아야 한다.

세네갈에서는 수용자들이 가족 공예나 보석 세공 등 전통적 공예 작업을 하고 비정부 기구가 이 물건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도록 주선하고 있다.

터키에서는 기업체들과 직업 훈련 교사들로 구성된 투르 히즈라는 자원봉사 기구가 교도 행정 당국과 협력해서 수용자들에게 현재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 용역 사업에 대한 훈련은 점증하는 관광 산업과 특히 관련이 있다. 자원 훈련 교사들은 산업 기준에 맞춘 훈련을 교도소에서 제공하고 호텔과 지방 정부에서는 실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주(州)의 라자문드리에 있는 두 교도소는 중앙 정부의 야자위원회와 공동 사업을 추진해서 수용자들에게 야자를 이용한 제품의 제작을 훈련시키고 있다. 수용자들은 이러한 제품의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협동 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며 그들이 석방 후에도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받을 예정이기도 하다.

작업에 대한 보수

작업 경험이 수용자들을 석방 후의 생활에 대비시키려는 것이므로 그들이 작업을 강제노동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보수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보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불될 수 있다. 가장 창조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수용자가 일반 사회의 유사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것과 동등한 임금을 지불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돈의 일부를 가족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하기 위해 그 돈의 일부를 기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간은 석방에 대비해 저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한 예가 아래에 기록되어 있다.

1933년 엘스워스 교도소는 센츄리 매뉴팩처링사(社)와 다양한 제품들의 생산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는 수용자들은 최저 기준 임금(교도소에서 통상 지불되는 급료와는 반대로)을 받는다. 이 급료에서 숙식비, 가족 부양비,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세금 등을 공제한다.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에는 수용자가 석방될 때 그에게 지급하기 위해 나머지 급료의 10%를 저축 계좌에 입금한다.

캔스اس주 교정부

안전한 작업 환경

수용자들의 작업 환경에는 위생, 안전, 산업 재해, 직업병 등에 관해 일반 사회의 작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도소 당국이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국가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교도소의 환경에서도 이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장 조항은 수용자들이 작업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작업 시간이 과도해서는 안 되며 수용자들이 다른 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미결 수용자의 작업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의 작업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야 한다. 공판을 기다리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도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몇 년 동안이나 할 일 없이 단조롭게 보내면 지루해서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그들에게도 작업을 제공해야 하고 작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공판 전 수용자들의 상황은 이 지침서 11장에 다루어져 있다.

교육과 문화적 활동

교도소에 수감된 많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읽고 쓰는 기본적 기술도 없는 수용자들이 상당한 비율에 이른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수행된 조사 결과를 보면 65%의 수용자가 대개 11살 아동 수준의 문자 해독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의 문자 해독력을 가진 일반인들은 23%도 채 되지 않는다.¹⁾ 이처럼 낮은 교육 수준이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의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도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어떤 개인들에게는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적절한 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최초의 진정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다.

공식적 교육과 함께 문화적 활동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화적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수용자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1) 사회적 소외 담당과, 2002년. 전과자들의 재범 방지. 정부 간행물 출판국, 런던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세계 인권 선언, 26조

-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2) 교육은 인성을 완전히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 27조

- (1) 모든 사람은 사회의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달과 그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6

모든 수용자는 인성의 완전한 발달을 목표로 하는 문화 생활과 교육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77

- (1) 종교 교육이 가능한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교육을 비롯해 교육을 통해 이익을 얻을 능력이 있는 모든 수용자가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2) 실행이 가능한 한 수용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수용자에 대한 교육은 해당 국가의 교육 제도와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78

오락과 문화 활동은 수용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모든 교도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40

모든 교도소에는 모든 범주의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는 오락 서적과 교육 서적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수용자들에게 도서관을 충실히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UN 경제 사회 이사회는 1990/20 결의안은 수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 (a) 수용자들에 대한 교육은 수용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전인적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
- (b) 모든 수용자는 문자 해독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반 교육, 기본적 교육, 직업 교육, 창조적, 종교적, 문화적 활동, 체육과 운동, 사회 교육, 고등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c) 수용자들이 모든 측면의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d) 교도소 행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가능한 한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 (e) 교육은 교도소 관리 양식의 필수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공인된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용자에 대한 저지 대책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f) 직업 교육은 개인의 폭넓은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 시장의 경향에 민감한 것이어야 한다.
- (g) 창조적 문화 활동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을 발전시키고 표현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 (h)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수용자는 교도소 외부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 (i) 교도소 내에서 교육을 해야 할 경우에는 외부 사회가 가능한 한 충실히 관여해야 한다.
- (j) 수용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 장비, 교사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년 재판의 운영에 대한 최저 기준 규칙(베이징 규칙)은 소년원에서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이 지침서 12 장에 더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실천 방법

교육의 중요성

교육은 수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목록에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보내는 기간을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게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보내는 모든 사람이 현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인 읽기, 쓰기, 기본적 산수 계산을 배울 수 있도록 기본적 필요성에 교육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인적 발전

그러나 교육은 이러한 기본적 기술을 가르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완전한 의미에서 교육이란 수용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가운데 전인적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에는 책과 수업을 위주로 한 교육과 음악, 연극, 미술 등의 문화 활동을 통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활동은 단순히 오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수용자가 한 인격체로 발달하도록 격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균형 잡힌 프로그램

01 장의 앞 부분에서 설명한 근로 작업과 기술 교육, 일반 교육, 문화적 활동, 체육 등이 포함된 균형 잡힌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은 모든 교도소에서 어느 정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들의 연령, 능력, 필요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 사이의 정확한 비율은 교도소마다 다를 수도 있다. 어떤 수용자들, 특히 청소년 수용자들은 마치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주간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수용자들에게는 정상적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야간에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수용자들이 하루의 절반을 작업에, 나머지 절반을 교육 활동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수용자들을 하루 종일 작업하게 할 충분한 양의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급료를 깎지 말아야 한다

01 장의 앞 부분에서 수용자들이 작업한 데 대해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수용자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 점에서 벌칙을 받아서는 안 된다. 수용자들이 학과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급료가 깎인다면 이것은 그들의 의욕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수용자들의 재능을 활용하기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엄청난 잠재력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그들 중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전직이 교사였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수용자들이 적절한 감독 아래 그보다 능력이 못한 수용자들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지역 사회의 지원을 활용하기

01 지침서의 8장에는 수용자들이 일반 사회와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하도록 보장하는 일의 중요성이 다루어져 있다. 이 점에서 교도소 당국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교도소 내에 비슷한 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사회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몇몇 교도소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도소에 와서 가르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中最한 가지는 교도소 당국이 수용자들을 교육시켜달라고 지방 교육 당국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도소 교육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그렇게 하면 또 수용자들은 일반 사회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따라 교육받게 된다. 또 수용자들은 석방 후에도 사회에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도소 당국은 지역의 문화 단체들을 교도소로 초청하여 수용자들과 함께 적절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어떤 교도소에는 노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의 지역 주민 단체들을 선정하여 교도소로 초청해서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음악회와 문화 공연을 펼쳐 그들을 즐겁게 대접하는 전통이 있기도 하다.

석방에 대한 준비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원칙 10

지역 사회와 사회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범죄의 피해자의 권익을 적당히 고려하면서도 수용자가 가능한 한 최선의 조건 아래 사회에 복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80

수용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석방 후 그의 장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그가 가족의 이익과 그 자신의 사회 복귀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교도소 밖의 사람들이나 기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립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80

- (1) 석방된 수용자들이 사회에서 재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나 다른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 석방된 수용자들에게 적절한 서류와 신분 증명서를 제공하고 적당한 주택과 일자리를 갖고 기후와 계절에 맞는 적절한 의복을 입으며 목적지에 도달하여 석방 직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도록 보살핀다.
- (2) 그러한 기관의 공인된 직원들은 교도소와 수용자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필요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수용자가 형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의 장래에 대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 (3) 그러한 기관의 활동은 그들의 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되거나 통합되어야 한다.

유럽 교도소 규정, 규정 70

- (2) 치료 프로그램에는 교도소로부터의 휴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하며 휴가는 의료, 교육, 직업, 가족 등이나 그 밖의 사회적 이유로 가능한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석방 후에 대한 준비는 영기를 시작할 때부터

거의 모든 수용자들은 결국 일반 사회로 돌아가도록 석방될 것이다. 석방에 대한 준비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비교적 단기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 자신과 일반 사회를 위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머물 곳과 생계비를 벌 기회와 사회적 지지구조가 있는 사람은 외부 사회에서 성공

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기 때문이다.

단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

여러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수용자들의 대다수가 단기형을 복역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빨리 지역 사회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때로는 그러한 수용자들은 교도소에 단기간만 있을 것이므로 교도소 당국은 그들의 재활 문제를 소홀히 하려는 유혹도 받게 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단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들은 금새 범죄를 저지르는 생활로 돌아갔다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진급한 과제이다.

장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

매우 오랜 기간을 복역한 수용자들이 석방될 때를 대비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그들에 대한 사회 내 지지 구조가 와해되었거나 소멸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 기관의 활용

교도소 당국은 일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기관들의 도움 없이는 수용자들을 석방에 대비시킬 수가 없다. 석방된 수용자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구에게 수용자들이 석방되기 전에 미리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사회 복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도록 교도소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도움

석방 후의 생활에 대비하도록 도움을 받는다면 거의 모든 수용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어떤 수용자들에게는 이러한 도움이란 그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증대시키도록 도와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 어떤 수용자들에게는 출소할 때 직장과 숙식 시설을 찾거나 고향까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여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도움이 주어질 수도 있다.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으면 보냈을수록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업자나 노숙자를 돋는 일반 기관들도 수용자들이 석방에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한 몫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반 기관들로는 보호 관찰 기관이나 사회 복지 기관, 종교 단체, 그 밖의 비정부 기구 등이 있을 것이다.

특별 프로그램의 활용

많은 국가들에서는 과도한 음주, 도박, 마약 등 흔히 범죄와 관련이 있는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을 돋는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사회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말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도소로 끌어들여야 한다. 최근 수년 동안 성범죄자 등 특수 유형의 수용자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이나 폭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이 분노와 난폭성을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증가해 왔다.

단기간의 석방

석방에 대한 대비에는 흔히 실제 석방 날짜가 되기 전 수용자에게 매일 교도소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방법은 그들에게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새로운 직업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 때 그들은 석방 후 계속 일하게 될 수도 있는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다.

수용자들, 특히 장기 복역을 한 수용자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는

흔히 섬세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비는 수용자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중 수감된 경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지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형기의 종료가 가까워질 무렵 수용자에게 한 번에 며칠 동안 정기적으로 가정에 돌아갔다 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좁은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거나 개별적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게 폭력이 가해진 사건의 경우 수용자의 석방 날짜가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매우 섬세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수용자가 범죄가 저질러진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필요와 수용자의 필요를 존중하기 위해 대안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간 복역을 한 수용자나 일반 대중에게 아직도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석방이나 가석방을 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공식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

가족 생활을 할 권리

교도소로 보내어진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상실했지만 인간으로서의 다른 권리들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가족과 접촉할 권리이다. 그것은 수용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교도소에 있지 않은 그의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들은 교도소로 보내어진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자매와 접촉할 권리가 있다. 교도 행정 당국은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직계 가족 구성원과의 모든 종류의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가족 접견권의 상실이나 제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요한 국제 인권 문서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12조

그 누구도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해 임의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3조

가족은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들은 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1979년 유럽 인권 법원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¹⁾

수용자와 그의 가족 간의 접촉이 유지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 인권 문서에 명시된 가족 생활의 권리에도 근거하지만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0조에도 근거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인도적으로,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

가족과 가능한 한 최선의 접촉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수용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¹⁾ 헤이머 대(對) 영국 정부,
1979년

교도소가 가족의 거주지와 근접해 있어야 한다

가족과의 접촉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교도소 당국이 몇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인정하면 교도소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용자의 가정이 있는 지역이 수용자를 어느 교도소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은 수용자에게도 문화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가족이 수감된 가족 구성원을 접견하려 오는 것도 쉬워질 것이다. 많은 수용자들이 주변 적이거나 빈곤한 환경의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도소가 가족의 거주 지역에서 먼 곳에 있는 경우 가족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족이 접견하려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용자들이 가족이 가져오는 의복, 식품, 약품, 그 밖의 생필품에 의존하는 국가들에서는 수용자가 가족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수감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귀후 보내기

수용자가 단기간 동안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일반 시민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보안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석방 규정에 따라 수용자가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 방문 제도는 단기형을 복역 중인 수용자나 장기 복역 중이지만 석방 날짜가 가까워오는 수용자들에게 특히 적합하다. 수용자로 하여금 형기가 종료되기 전 단기간 동안 교도소를 나가 가족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결정은 이 지침서의 5장에 설명된 바와 같은 신중한 개인별 위험도 평가에 근거해서 내려져야 한다.

가족 접견 때의 프라이버시 존중

가족과 친지들은 교도소로 수용자를 접견하려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견은 교도소 환경이 허락하는 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의 프라이버시가 허용되어야 한다. 접견, 특히 가까운 가족의 접견은 특권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접견의 빈도나 접견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한하려면 그 때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원칙은 접견을 최대화하고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접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그 자녀들

여수용자들은 특별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육아를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수감된 어머니는 자녀와 격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감된 여성은 대개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매우 걱정스러워 한다. 그들의 자녀도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어머니와 자녀의 복지와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도소 직원들은 그들을 돋고 모자간의 유대 관계가 유지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 지침서 13장에 더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소년 수용자와 그 부모

소년 수용자들은 신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물질적, 도덕적 지지와 자극을 제공하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와의 접견은 특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이 지침서 12장에 다루어져 있다.

접견인들에 대한 대우

가족과 다른 접견인들이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점이 교도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좋은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수용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도소 내 보안과 안정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서신 왕래와 전화

독서, 텔레비전, 라디오

가족의 접견 외의 다른 접촉 방법도 중요하다. 수용자들은 가능한 한 자유롭게 서신 왕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들은 그들이 소속된 지역 사회와 넓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최근의 것들 까지 잘 알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도소 생활의 비정상성을 감소시키고 수용자가 석방되었을 때 돌아갈 지역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는 않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자는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서적,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수용자들

많은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수용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들에게 동일한 사항들에 대한 배려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도소 당국은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이 가족이나 그들 자신의 문화와 접촉이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접견, 서신 왕래, 전화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8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과 그의 변호인 사이의 면담은 법집행관이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9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특히 가족 구성원의 접견을 받거나 그들과 서신 왕래를 할 권리가 있고 법이나 합법적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합당한 상황에서 합당한 제한을 받으며 외부 세계와 의사 소통을 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20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그의 통상적 주거지에 가까이 있는 구금 장소나 수감 장소에 합리적으로 수감될 수 있다.

수용자들은 필요한 감독 아래 가족이나 평판 좋은 친지와 서신 왕래와 접견을 통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수용자와 그의 가족 간에 양자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시키는 데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천 방법

접견을 통한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 유지

교도소 당국이 가정 생활을 누릴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수용자들이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해 가진 책임을 인식하도록 장려하기를 원한다면 가족이 합당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있는 구성원을 교도소의 합법적인 보안 요건을 약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누리며 접견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접견 방법을 제공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음에 설명할 가족 접견 방식은 이러한 필요를 가장 충실히 충족시키는 것이다.

가족의 접견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런 바 가족 접견, 또는 장기적 접견이라는 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많은 교도소들과 수용자 부락들에는 교도소 경계 내에 작은 아파트들이 무리를 지어 있다. 이곳에서 접견자들은 최장 72시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지낼 수가 있다. 이 아파트의 일반적 특징은 최다 여섯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공동 부엌, 휴게실, 화장실 겸 욕실 등과 각 가족을 위한 작은 시설들이 여러 개 있다는 점이다. 이 시설에는 각 가족용 침실이 한 두 개 있다. 자격이 있는 수용자들은 일 년에 최다 4회까지 이 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있다. 한 번 방문할 때 서너 명이 방문하는 경우가 흔하다. 방문자들은 아내나 남편이나 동거인,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 등이 될 것이다. 미국의 어떤 교도소들과 캐나다에서도 그와 유사한 시설이 제공된다. 그러한 시설은 흔히 이동식 주택인 경우가 많고 이 주택은 교도소의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를 위해 목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가족의 방문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보안 점검을 위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방문을 정상적 가정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 교도소에 수감된 다른 가족 구성원과 유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틀림없다.

인도의 라자스탄주(州)와 몇몇 다른 주에서는 형기의 일부를 이미 복역하고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장기 수용자들을 위해 개방된 마을 형태의 교도소가 설립되어 있다. 그들은 이 교도소 안의 개별적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인근 지역으로 농사를 짓거나 다른 직업 활동을 하러 출근할 수 있다. 수용자들의 가족을 위해 학교와 다른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부부 접견

위에 설명한 가족의 방문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서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허용되는 배우자의 접견이라는 제도와는 다르다. 이것은 배우자나 오랜 동안의 동거인 등 한 사람이 최장 세 시간 동안 접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접견 시간 동안 부부는 침실과 샤워 시설과 그 밖의 위생 시설이 갖추어진 작은 시설에서 단둘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접견보다 훨씬 덜 공식적인 접견 제도가 중남미의 많은 교도소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말에 남성 수용자들에게 가족 접견이 허용되는 것이 관례이다. 어떤 교도소에서는 여수용자에게도 동일한 관례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한 접견은 보통 감방이 있는 구역에서 있게 되는데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밧줄에 시트와 담요를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

공개 접견

모든 수용자들에게 언제든지 사적인 가족 접견을 허락하는 것은 실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하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교도소 접견은 큰 전용 접견실에서 있게 된다. 이 접견실은 법적인 보안의 필요성과 가족의 접촉을 유지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자와 접견자가 아무런 물리적 장벽 없이 서로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한다. 탁자나 책상에 마주 앉아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용자가 접견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접촉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접견자가 부모를 만나러 온 자녀인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접견이 수용자와 접견자가 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서 15 분 동안 대화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한 교도소에서는 교도소 마당의 어떤 부분을 접견 구역으로 정하고 벤치와 지붕을 설치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접견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미결 수용자를 위한 접견 제도

가족과 친지와 접촉할 권리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뿐만 아니라 공판을 기다리는 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공판을 기다리는 수용자가 해당 사건의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전달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실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경우는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교도소 당국은, 단순히 공판 전 수용자들에게 유죄를 자백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그들에 대한 접견 조건을 제한해달라는 수사 경찰이나 기소 당국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이 지침서의 11장에 더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접견인에 대한 수색

교도소에서는 접견인이 마약이나 무기 등의 불법적 물품을 수용자에게 몰래 가져다주려고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보안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접견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수용자의 신체 수색을 하거나 접견인이 접견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신체 수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접견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필요성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모든 보안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이 지침서 5장에 언급되어 있다.

폐쇄된 접견, 또는 접촉이 불가능한 접견

모든 합당한 경계 조치를 취한 후에도 보안 요건을 위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하는 수용자와 접견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용자와 접견자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놓여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접견 방식은 흔히 폐쇄된 접견, 또는 접촉이 불가능한 접견이라고 불린다. 이 때 일반적 방법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 유리벽을 사이에 놓고 대화를 위해서는 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수용자에 대한 이러한 제한 조치가 장기간 적용되면 그는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차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제한 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판을 기다리는 모든 수용자들이나 고도의 보안 조치가 취해진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경우에 이 지침서 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일종의 개별적 위험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험도 평가는 보안상의 유의사항에 근거해야 하고 처벌이나 제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개별적 사례들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화상 회의

여러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수용자들이 화상(畫像)으로 가족과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감된 수용자나 교도소까지 여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에게 유용한 또 하나의 시설이다. 이러한 장치의 사용은 수용자와 그 가족 사이의 직접적 접촉의 대체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호주의 퀸즈랜드 교정 위원회는 이 주의 몇몇 교도소들과 벽지에 있는 원주민의 고향과의 사이에 화상 회의 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특히 고향의 친척들이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친척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가 있다.

싱가포르의 교정부는 사상 최초로 교도소 내 화상 회의 시설을 설치했다. 이러한 시설은 교도소에서 너무 먼 곳에 살고 있거나 교도소에 직접 오기를 꺼려하는 수용자의 친척들을 돋기 위한 것이다.

직원 통신기의 접견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나 친지의 접견을 받지 못하는 수용자들도 많다. 이것은 그들이 수감되기 전의 생활 상황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으로 인해 의혹을 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교도소 당국은 해당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이 수용자들을 접견해서 그들이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돋게 하는 제도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교도소에 대한 이의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논점은 수용자와 그 가족이 가능한 한 정상적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허용 받을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접견을 보장하는 것은 교도소 운영자들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데에도 이익이 된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용자는 교도소 생활의 통상적인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그들의 마음 속에 불안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실제적 문제나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직원들도 교도소의 테두리 너머에 있는 수용자의 행동, 생활, 성격 등의 측면을 알게 되어 각각의 수용자를 한 개인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좋은 접견 시설은 교도소가 기능을 잘 수행하는 데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신

접견 외에도 가족이나 친지와의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서신 왕래이다. 많은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수용자들이 국비로 최소 수량의 서신을 보낼 수가 있고 그 수량을 넘으면 보내는 서신에 대해 우편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대체로 교도소의 운영 면에서는 수용자가 받는 서신의 수에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거나 읽어보기

어떤 교도소에는 상당히 최근까지도 수용자에게 오는 서신이나 그가 보내는 서신을 직원이 모두 검열해야 하는 전통이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유는 수용자가 서신 왕래를 하는 사람과 탈출 계획을 논의하거나 보안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논의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둘째 이유는 이것이 직원이 사망이나 결혼의 파탄 같은 나쁜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었다는 점이다. 현재는 보안상의 이유만으로 모든 우편물을 검열하는 것이 교도소 운영의 면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예를 들어 탈출을 숙고하는 수용자가 서신에서 그것에 대해 언급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수용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가족의 소식을 직접 접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수용되고 있다. 보안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주고받는 서신을 검열하고 서신 왕래를 승인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의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서신을 지속적으로 검열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해서 읽어보거나 표본으로 선택해서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금지된 물질의 검사

교도소 당국은 교도소에 보내어지는 서신에 무기나 마약 같은 금지된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좋은 관행이 있는데 그것은 교도소에 오는 모든 서신을 받는 당사자의 면전에서 개봉하는 것이다. 이 때 직원은 봉투 안에 금지된 물질이 들어있는지 검사하고 그것을 읽지 않고 해당 수용자에게 전해준다.

전화

많은 국가들이나 주의 교도소 체제에서는 현재 수용자들이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비용의 계산은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수용자로부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비를 부담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매우 높게 들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에는 일반 전화보다 더 높은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어떤 교도소 체제에서는 수용자들이 특수 전화카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카드로는 승인된 전화 번호로만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수용자가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이 그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대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전화의 감시나 녹음

서신의 경우처럼 전화의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의 정당한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화 통화는 즉석에서 이루어지므로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들이 전화를 통해 교도소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탈출 기도를 모의하는 등 불법적 활동을 계획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어떤 국가들에서는 모든 전화를 녹음하고 녹음 테이프를 지정된 기간 동안 보관하기도 한다. 수용자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직원이 직접 옆듣는 전화는 높은 위험도가 있

다고 평가된 수용자들이 걸거나 그들에게 온 전화뿐이다.

전파 우편

어떤 교정 당국은 수용자들에게 전자 우편 등 다른 통신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델리의 티하르 교도소에서는 이것이 허용되고 있다. 어떤 수용자들, 특히 외국 국적의 수용자들에게는 이것이 가족과 접촉을 유지하는 신빙성 있고 비싸지 않은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법률 고문이나 직업 고문과의 접촉

가족과 친지와의 접촉 외에도 수용자들은 비정부 기구의 직원이나 인권 감시 단체 직원 등 전문 단체 직원이나 변호사와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견이나 통신은 그 자체의 범주가 정해져 있다. 이것은 공판 전 수용자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사법 과정에 연루되어 있는 수용자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그러한 경우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의 변호나 항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접촉 제한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전문 단체의 조언자와의 접견 때에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접견은 보통 교도소 직원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접견자가 휴대하거나 보내는 공식 서신이나 자료를 수색하는 문제도 특별히 민감한 사안이다. 이 문제들 중 몇 가지는 이 지침서 11 장에 다루어져 있다.

독서 자료, 텔레비전, 라디오를 이용할 권리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9

수용자들은 신문, 정기간행물, 특정한 기관의 간행물 등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강의나 그밖에 교도 행정 당국이 공인하거나 관리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중요한 뉴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실천 방법

외부 정보의 경기적 획득

수용자는 가족이나 친지와 접촉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보다 넓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최근 사건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영상 대중 매체의 이용을 검열할 이유는 없다. 또 해당 국가의 정상적 검열의 정도 이상으로는 해당 매체의 윤리 문제에 대한 검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교정 당국은 인터넷의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지만 부적절한 활동을 할 기회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 너머의 세계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획득은 수용자들이 교도소 담장 너머에 그들이 언젠가 돌아갈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므로 중요하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식하고 있으면 수용자들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보다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장기 수용자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교도소 밖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급속한 변화들을 인지하고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말라위에서는 비정부 기구의 변호사 보조 직원들이 수용자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고 있다. 그들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 전국지를 가져와 교도소 마당에 늘어놓아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많은 교도소에는 다수의 외국인 수용자들이 있고 그들의 가족은 물론 다른 국가에 살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수용자들은 자국의 재외 공관 직원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영사 관계에 대한 빈 협정, 36조

1. 파견국 국민에 관한 영사 임무의 행사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 (a) 영사관원은 파견국 국민과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파견국 국민도 파견국의 영사관원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면에서 동등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 (b)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령국의 관할 당국은 파견국의 영사 구역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 체포되거나 교도소에 보내어지거나 구금되어 공판을 기다리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파견국의 영사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체포되거나 수감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영사관에 보내는 통신문은 상기(上記) 당국으로 지체 없이 전송되어야 하며 상기 당국은 당사자에게 이 (b) 항에 규정된 그의 권리에 대해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구금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접견하고 그와 대화를 하거나 서신 왕래를 하고 그의 법적 대표자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영사관원은 또 그의 영사 구역에서 수감되어 있거나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영사관원은 수감되어 있거나 구금되어 있는 자국민이 명확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8

- (1) 외국인 수용자들에게는 그들이 속한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당한 설비의 이용이 허용이 되어야 한다.
- (2) 해당 국가에 외교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난민이거나 무국적자인 수용자들에게도 그들의 이익을 책임진 국가의 대사관 직원이나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적, 또는 국제적 기관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설비의 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서신 왕래와 전화의 무료 제공

이 수용자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지가 접견하려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다. 교도소 당국은 그들이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우편 요금을 무료로 하는 서신의 수를 늘려주거나 교도소 당국의 비용으로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있다.

외국어로 된 경기 간행물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그러한 수용자들에게 자국어로 된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의 접속을 활용

외국인 수용자가 자국의 대사관 직원과 접촉하기는 어렵거나 드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교도소 당국은 해당 지역 사회 안에 자원해서 접견을 와서 그러한 수용자가 자신의 문화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다른 외국인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체제

공정하고 정당한 교도소 관리

교도소의 모든 체제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당하며 모든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도소는 규칙과 규정이 있는 공동 사회이고 이러한 규칙과 규정은 모든 관련자, 즉 직원, 수용자, 접견자 등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곳은 계급적 구조가 있는 곳이므로 이 규정은 수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요구와 불평에 대한 명확한 절차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는 명확한 일련의 절차가 있다면 그릇된 결정을 내린 결과를 수습하는 복잡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될 것이다. 수용자들은 교도소의 규정을 준수하고 결국은 그들이 돌아가게 될 외부 사회의 규정도 준수해야 하므로 규정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해해야 한다. 때때로 수용자들은 그들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처우하는 방식에서 불공정한 요소를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가장 잘 관리되는 교도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수용자들이 특정한 요구를 하고 그들이 품은 불평을 등록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수용자들과 그들을 직접 다루는 직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불평을 하는 여러 단계들

첫째로 수용자들은 그들에게 관계된 문제를 그들의 직접 감독자인 직원에게 제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 문제가 그 수준에서 해결될 수가 없으면 그 요구나 불평을 교도소 관리 당국에 제기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면 수용자는 교도소 밖의 상급 기관에 그것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교도 행정 당국들 중에는 그와 유사한 외부의 조직을 통해 요구와 불평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곳들도 많다. 이러한 외부적 해결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의 감시 단체, 옴부즈맨, 지역 정치가나 국가적 정치가 등이 있다.

불평을 제기하는 수용자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불평 대상인 사람들의 감독 아래 살고 있는 교도소에서는 불평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불평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든 그러한 불평을 하는 것이 수용자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용자가 불평을 제기한 데 대한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항상 명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처벌을 방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의 불평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불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조

본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공식적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받아야 한다.
- 그러한 구제책을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는 관할 사법, 행정, 입법 당국이나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규정된 다른 관할 당국에 의해 판단되고 그에 따라 사법적 구제책의 가능성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 그러한 구제책이 승인되면 관할 당국이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33

-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 또는 그의 변호인은 그에 대한 처우에 관해, 특히 고문이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있었던 경우에 구금 장소의 관리를 책임진 당국이나 그보다 상급의 당국에,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권한이나 구제 권한이 있는 적절한 당국에 요구나 불평을 할 권리가 있다.
-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이나 그의 변호인이 본 원칙의 1 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의 가족이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나 불평에 대한 기밀이 지켜져야 한다.
- 모든 요구나 불평은 부당한 지체 없이 즉각 처리해서 응답해야 한다. 요구나 불평이 거부되거나 지나치게 지체되는 경우에는 고소인은 해당 사안을 사법 당국이나 다른 당국에 제기할 권리가 있다. 본 원칙의 1 항에 따라 요구나 불평을 한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이나 고소인은 그러한 요구나 불평을 한 데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36

- 모든 수용자는 주중에는 매일 교도소장이나 소장을 대신할 권한이 있는 관리에게 요구나 불평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교도소 시찰관이 시찰하는 기간 동안 시찰관에게 요구나 불평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수용자는 소장이나 다른 직원이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사관이나 다른 조사하는 관리와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모든 수용자의 요구나 불평은 그 내용을 검열 받지는 않지만 적절한 형식을 갖춰 승인된 경로를 통해 중앙 교정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나 그 밖의 적절한 당국에 제기되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 모든 요구나 불평은 명확히 경박하거나 근거가 없지 않다면 부당한 자체 없이 즉각 처리해서 응답해야 한다.

실천 방법

이해할 수 있는 절차

우수한 교도소 관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무엇보다도 심각한 불평이 제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교도소의 일상 생활의 모든 국면에 관한 아주 명확한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배포해야 할 책임은 이 지침서 3 장에서 이미 다루어졌다. 이 절차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언어로 작성되어 모든 수용자들과 직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지침서는 수용자가 교도소에 입소하자마자 배포되는 종합 정보 꾸러미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규칙과 규정을 포스터에 써서 눈에 잘 띠는 곳의 벽에 붙여두어야 한다. 문맹인 수용자들에게는 이 규칙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불평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절차에는 수용자가 받는 처우에 대한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담당 직원 수준에서 시작해서 교도소의 최상급자에게까지, 나아가 필요하다면 교도소보다 더 상급 수준에까지 수용자가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불평의 제기에 대한 장애의 제거

수용자가 합법적인 고소나 불평을 제기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떤 절차도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 교도소의 규율에는 수용자가 불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규정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수용자가 직원에게 불리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그를 처벌하는 규정 같은 것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에 대한 피해의 방지

수용자들이 불평을 못하는 주요한 장애는 교도소 직원이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불평을 했다고 해서 수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하고 수용자들이 불평한 데 대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비밀리에 불평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불평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러한 불평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단계에서 상급 관리는 보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 교도소 직원은 자신이 고발의 대상이 된 경우 자연법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과 몇몇 다른 국가들에서는 수용자의 고소를 조사하는 검사들이 자물쇠로 잠긴 상자에 담긴 고소장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상자에 대한 열쇠는 검사들만 가지고 있다.

요구와 불평의 해결

많은 고소들의 내용은 일과나 처우에 대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일반 사회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교도소라는 규제가 매우 심한 사회에서는 큰 중요성을 떨 수가 있다. 교도소에서는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국면을 규정에 따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교도 행정 당국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간단한 요구가 불평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불평이 공식적 불평으로 발전되는 것, 또는 공식적 불평이 더 높은 당국에 대한 항소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불평의 비공식적 해결

이것을 성취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일선의 직원들과 그들이 매일 직접 대하는 수용자들 사이에 좋은 개인적 관계가 맺어지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지침서의 2장에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는 문제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해당 직원에게 직접 요구를 하거나 불평을 하게 될 것이다. 훈련이 잘 된 직원은 어떤 문제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는 상급자에게 위임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다. 또 그 직원은 그러한 과정을 해당 수용자에게 설명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좋은 관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수용자에게 합당하게 가능한 한 빨리 응답을 주는 것이다. 응답이 부정적인 것인 경우에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한 경우에 수용자는 주어진 대답이 부정적인 것이라도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의 요구가 불평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식적 절차

모든 요구와 불평을 이러한 비공식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교정 당국은 개인간에 비공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요구와 불평을 처리하는 공식적 절차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중에 매일 교도소장이나 소장이 지명한 고위 직원이 수용자들의 그러한 모든 요구나 불평을 검토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수용자는 직접 요구나 불평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요구가 많아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하게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구가 구두로 이루어지든 서면으로 이루어지든 관계 없이 교도소는 그러한 요구를 공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대한 응답 방식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요구나 불평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일반적 절차에 따를 경우 응답을 하는데 보통 며칠이 걸릴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요구가 정상적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것인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를 말해주어야 한다.

상급 기관에 불평을 제기하기

교도소장이 요구나 불평을 거부하거나 불평이 소장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수용자는 해당 지역 교정 기관이나 국가 교정 기관에 근무하는 상급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별적 직원에게 대한 불평은 그 직원을 통해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자가 상급 기관에 비밀리에 요구와 불평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외부의 독립 단체에 불평을 제기하기

요구나 불평을 독립적 감시 단체나 교도소 조직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이 지침서 10 장에 다루어져 있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가 외부의 사법 당국이나 독립적 감시 단체에 불평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에게 외부의 불평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잠재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가나와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는 수용자들은 인권 위원회의 위원에게 그들의 용건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교정 기관법에 따라 감사관(교도소 감사관)이 남아프리카의 여러 교도소에 독립적 교도소 방문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립적 교도소 방문자들은 수용자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일반인으로서, 공개적 추천과 지역 사회의 단체들과의 논의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 증진과 수용자들의 인간적 발전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라고 확인된 사람들이다. 독립적 교도소 방문자의 일차적 임무는 수용자들의 불평을 처리하는 것이다.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

모든 요구와 불평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다른 사안보다 훨씬 더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성질의 주장이 교도소장에게 즉시 제출되고 만약 그러한 주장의 대상이 소장인 경우에는 외부의 상급 기관으로 즉시 제출되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포함된 불평을 처리하는 데에도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주장은 대개 범죄 행위의 수사나 기소를 담당한 일반 사회의 기관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기관은 이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 당국이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교도소로 되돌려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법적 절차에 대한 불평

수용자는 자신의 구금, 형량, 석방 날짜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성질의 요구는 적절한 사법 당국으로 넘겨져야 한다.

징계 결정에 대한 항소

수용자는 또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결정에 대해 그것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자신이 부당하게 처벌받았다고 느낄 때 불평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지침서 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를 상급 당국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수용자에게 불평은 중요하다

수용자들이 제출하는 요구와 불평의 대다수는 교도소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 중 다수는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적 중요하지 않지만 해당 수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음식, 잊어버린 물건, 편지의 지체, 접견과 관련된 문제, 또는 직원의 태도 등일 수도 있다. 수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다만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일 뿐인 경우도 많다. 수용자가 그러한 불평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속적인 불평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집단 불평

지금까지 설명한 절차는 개별적 수용자가 제기한 요구와 불평에 관한 것이었다. 교도 행정 당국은 특별한 문화나 전통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화나 전통이 관련된 경우에는 불평이 개별적으로 아니라 집단의 지도자를 통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체 제

**교도소는 공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교도소는 사람들이 의지에 반해서 구금되어 있는 장소이다. 학대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도소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기관이어야 한다. 국가에 의해, 또는 국가를 위해 관리되는 모든 기관은 공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교도소의 강제적인 성격 때문에 이것은 교도소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외부의 감시는
필수적이다**

01 지침서는 교도소의 좋은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다. 그러나 가장 잘 관리된 교도소에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문이 때때로 제기되고 불평이 제기된다. 일반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은 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가 없으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감사 제도가 있어야 한다.

외부 감시의 가치

감사 절차는 수용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감사란 적절한 절차가 확립하고 직원들이 항상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감사는 이 지침서에서 다루어지는 교도소 생활의 모든 국면에 대해 시행되어야 한다.

**외부의 감시는 교도소
직원들을 위한
안전장치이다**

감사는 교도소 직원들을 위한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란 수용자를 학대했다는 주장이나 직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면 그것을 인식하고 관련 직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은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는 잘못한 점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감사를 통해 다른 곳에서 귀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좋은 관행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를 통해 업무를 전문적으로 잘 수행하는 직원들의 공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일반 사회와의 연관도
일종의 감시이다**

감사는 몇 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교도소와 지역 사회의 기관들 사이에 정기적 접촉이 있는 교도소의 경우에는 중요한 수준의 비공식적 감시가 이루어진다. 일반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는 상황에서는 교도소 당국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고 지역 사회의 시민들이 해당 지역 내의 교도소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일반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역 학교의 교사, 지역 병원의 건강 관리 요원, 종교 단체나 문화단체의 회원 등일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이 지침서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다. 그들은 엄격한 의미의 감사관은 아니지만 그들의 방문 자체가 일종의 비공식적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이 교도소의 직원들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독립적인 일반 시민 단체의 감사

어떤 교도 행정 당국은 독립적 일반 시민 단체의 감시를 받는 제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공식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지역 감시 단체들은 교도소의 업무를 보다 공식적으로 감시할 책임과 교도소 당국과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보고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한 제도는 인권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학대를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교도소와 사회 사이에 공식적 유대 관계를 맺어준다. 사실 교도소는 사회를 위해 운영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에 대한 감사

중앙 정부의 교도 행정 기관의 직원들이 개별적 교도소에 대해 수행하는 보다 공식적 형태의 감사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감사는 흔히 절차에 대한 감사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감사는 보안, 재정, 수용자를 위한 활동, 직원 교육, 차별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친 것이다. 많은 교도 행정 당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교도소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기관에서 개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교도 행정 당국에서는 산하 교도소들에 대한 감독권을 임명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교도소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감사는 흔히 행정 과정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감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독립 단체의 감사

또 한 가지 중요한 형태의 감사로는 개별적 교도소나 교도소 조직과는 관계없이 독립된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가 있다. 그러한 단체의 직원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의 직원들을 의회가 임명하고 직원들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단체는 가장 독립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 그 직원들이 정기적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예도 있다. 또 그들이 감사를 특별한 목적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교도소의 일상적 운영 상황을 감사하고 때때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감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가장 포괄적인 감사 형태는 전술한 모든 유형의 감사가 병행해서 시행되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다.

각 지역의 감사 기구들과 그 밖의 감사 기구

UN이 임명한 고문에 대한 특별 보고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그가 습관적으로 교도소들을 방문하고 그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오면서 그의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지역적인 면에서는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가 임명한 아프리카의 교도소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자가 아프리카의 교도소 체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좋은 관행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유럽 이사회의 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 대우나 차별의 방지를 위한 위원회는 조직된 지 가장 오래된 정부간 기구로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걸쳐 분포된 유럽 이사회 소속 국가들의 구금과 수감 여건의 향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전시(戰時) 같은 특별 상황에서 교도소를 감사하는 분야에서 매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국가들이나 주는 국내적이거나 국제적인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들에 교도소를 방문할 공식적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국제 문서들에는 모든 교도소와 구금 장소들이 그러한 교도소의 운영을 담당한 기관과는 별도인 감사 제도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 문서들에는 또 수용자들은 합법적인 보안 조치 아래 감사관들과 충실히 비밀 접견을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29

- 1 관련법과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기 위해 구금 장소나 수감 장소의 운영을 직접 책임진 당국과는 별개의 관할 당국이 임명하고 그 당국에 책임을 진 자격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구금 장소를 시찰해야 한다.
- 2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본 원칙의 1항에 따라 구금 장소나 수감 장소를 시찰하는 사람들과 비밀을 완벽히 보장받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 그러한 장소의 보안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5

관할 당국이 임명한 자격 있고 경험 많은 감사관이 행정 시설과 업무를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감사관의 임무는 특히 교정 시설이 현행법과 법규에 따라, 또 행정과 교정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실천 방법

시민 사회가 관련되면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01 지침서의 다른 장들에 교도소와 지역 시민 사회와의 좋은 실무 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이점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한 관계의 일환으로 시민 사회의 존경받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치가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이점은 이러한 교류가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한 비공식적 형태의 독립적 감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문자들은 직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수용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어 문제점을 관찰하고 학대의 징후를 발

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존재는 개인간의 좋은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 사회 대표들이 교도소에 있으면 학대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저지하고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식적 감사 절차는 잘못된 행위가 일어난 뒤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자들이 교도소에서 목격한 일에 대한 논평은 교도소 밖의 사회의 기대치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시 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교도소의 기존 절차에 의문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

아래에 설명할 보다 공식적 유형의 감사관들은 공식 감사를 수행할 때마다 반드시 이들 정기적 교도소 방문자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시민의 공식적 감사

어떤 교도 행정 기관들에는 지역 사회의 일반 시민 단체가 교도소를 공식 감시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또 어떤 교도 행정 기관들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최근 도입했거나 그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한 제도들 중 최선의 제도는 시민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들을 임명하여 교도소 생활의 모든 국면들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감시자들은 교도소 내 모든 구역에 대한 무제한적 출입권을 가져야 하고 교도 행정 기관이 아니라 의회 같은 곳에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터키는 최근 각 사법위원회에 그 위원회의 사법권 아래 있는 교도소들을 감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소규모 독립 감시 심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개 각 심의회는 너댓 군데의 교도소를 책임지고 있다. 각 감시 심의회는 법무부에 3 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터키의 법에 따라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 받은 공공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그 보고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에 대한 감사는 주요한 임무이다

대부분의 교도소 조직에는 행정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교도소 내의 모든 중대한 사건들을 참관하기 위해 일반 시민 감시자들을 소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것은 수용자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직원들을 부당한 주장에서 보호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교도 행정 기관들에는 어떤 형태의 내부적 감사 과정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교도소와 교도소 관리에 대한 지식이 많은 교도 행정 기관의 고위 직원들이다. 그들은 대체로 중앙 교정 기관의 부속 기구인 점검팀에 소속되어 있고 개별적 교도소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교도소들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임무별로 팀을 이루어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여성 교도소, 또는 소년 교도소를 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사

어떤 교도 행정 기관에서는 이러한 팀이 감사관이라기보다는 점검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의 주요한 임무는 적절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당국의 지시 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배임 행위나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

관의 역할과 점검관의 역할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점검관은 대체로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반면 감사관은 어떤 일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어떤 교도소가 절차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정부의 감사관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이 지침서에 제시된 조건들의 판점에서 보면 잘못 관리되고 있는 교도소일 수도 있다. 교도소 점검관들은 관리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은 교도 행정 기관과는 별도의 감사 단체나 감사관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지 그들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내부 감사관은 무제한적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중은 관행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적 감사는 교도소의 원활한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독립 감사관의 공적 지위

내부 감사팀은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모든 장소와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미리 예고한 감사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예고하지 않았거나 정상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라도 특별 감사를 수행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대개 중앙 정부의 교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 점검과 감사의 역할은 단순히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감사와 점검의 과정에서 좋은 관행도 찾아내어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법무부의 사법 업무 감사국과 고용사회부의 사회 문제 감사국의 직원들 중에서 선정하여 공동팀을 임명해서 수용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기구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고용사회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 등에게 제출되었다.

내부적 감사 절차 외에도 교도소 조직과는 완전히 별도인 감사 형태가 있어야 한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정부가 감사관들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조직의 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감사관이 의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 고충 처리관 같은 형식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관이 자신이 감사한 결과를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면 그의 보고서에 담당 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2000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州)에서는 교도소를 독립적 외부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교정 업무 감사국이 설립되었다. 이 감사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의회의 질의에 직접 대답하게 되어 있다.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에서는 판사들이 교도소가 법에 따라 관리되고 수용자들이 인도적 처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판사들은 교도소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독립을 보증할 수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노고가 큰 판사들'은 교도소를 감사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독립 감사관의 지위는 국민이 그들의 임무를 인식함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들을 교도소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감사관이 판사 같이 교도소와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감사반원들 중 몇 명은 적어

감사관들은 중대 사고 우에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뒤의 감사 형식

독립 감사팀은 정상적 감사 프로그램 외에도 중대한 사건이나 폭동이 일어난 후 감사를 수행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은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직원이건 수용자들이건 모든 관련자들과 면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국가들이나 주에서는 전문적 교도소 감사반 외에도 정부나 중앙의 다른 기관들에 교도소 생활의 일정한 국면들을 감사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기관들로는 인권 위원회나 감사원 같은 기관들이 있다. 감사 기관들과 수용자들의 불평을 수사하는 기관들 간에 공식적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감사에 대한 보고와 대응

독립 감사관들은 교도소에 대한 그들의 보고서의 모든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보안에 관한 기밀 정보와 개인적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관이 그들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러한 보고서가 무시된다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모든 감사 제도의 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모든 형태의 감사에는 명확한 보고 절차와 긴급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보고서를 받은 개별적 교도소, 교도 행정 기관, 정부 등도 즉각적으로, 충실히 그에 대응해야 한다. 합법적인 보안 사항만 준수된다면 보고서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공개되는 것이 유용하다.

유럽 이사회 고문 방지 위원회나 아프리카 특별 보고자 등이 작성한 보고서의 발표는 다른 교도소들과 교도 행정 기관들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을 제거하고 좋은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부차적 영향을 주었다.

체제

몇 가지 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과반수가 아직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수용자들이다. 그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들이 연루된 사건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인 사람들이다.

- 사법 관할 지역들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법률 용어가 다르다. 그들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에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다. 이 지침서에서는 쉽게 표현하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을 뚱뚱그려 공판 전 수용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수용자라는 단어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에만 사용된다. 아직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피구금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침서에서는 역시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용자라는 단어를 법률 기관의 험가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교도소라는 단어를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을 수감하는 장소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아직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수감하는 장소는 구치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서는 교도소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무죄라는 가정

공판 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들을 항상 무죄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도 행정 기관은 그들이 아직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 대한 처우와 관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공판 전 구금의 문제점

공판 전 수용자들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무죄라고 가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루된 사건이 일단 재판을 받으면 사실 무죄라고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법 절차상 사건이 재판까지 이르는 기간이 느리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역할 형기보다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기간이 훨씬 더 긴 경우도 자주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당한 불만을 낼고 그것이 많은 공판 전 수용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교도 행정 기관은 이러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너무 많은 미결 수용자

많은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사법 절차가 완만하고 그로 인해 미결 수용자들이 많다는 점이 교도소 과밀 현상의 주요 요인들이 되어 있다. 이 점에서 빈곤도 주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수용자들 중에는 보석 보증금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미결 수용자들이 교도소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온두라스, 부룬디, 모잠비크, 인도 등의 국가들에서는 70%를 초과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에는 교도 행정 기관에 구금된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고 경찰서 유치장이나 다른 구금 장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사 기관과 교도 기관의 분리

경찰과 검찰 등 범죄의 수사를 책임진 기관들과 사법 당국의 명령에 따라 고발된 사람들을 구금하는 책임을 진 교도 행정 기관 사이에는 임무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고발된 사람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은 수사 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감 환경이 수사의 한 요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공판 전 수용자가 수사관에게 협력하거나 그들의 죄를 자백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그들을 매우 제한된 환경 속에 수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수사 당국이나 검찰 당국은 교도소 당국이 재판을 기다리는 수용자들을 처우하는 방식에 대해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인도는 경범죄 재판소장들이 매달 한 두 번 법정을 교도소로 옮길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경범죄 재판소'를 교도소까지 확대했다. 라자문드里 중앙 교도소에서 열린 한 번의 그러한 경범죄 법정에서는 순회 치안 판사가 하루에 23건의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들이 법정까지 이르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세계 인권 선언, 11조

형사 범죄로 고발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도록 보장받는 공개 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하다고 가정될 권리가 있다.

시민 ·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9조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임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법에 따라 확립된 이유나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체포된 사람은 그 누구든 체포될 때 그의 체포에 대한 이유를 통지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고발에 대해 즉각 통지 받아야 한다.
- 형사 고발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그 누구든 사법권의 행사 를 위해 즉각 판사나 법에 따라 허가된 다른 공무원 앞에 인도되어야 하고 합당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가 있다. 재판을 기다

리는 사람들은 구금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규칙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석방은, 사법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재판을 받으려 출두한다는 보장을 받는 경우나, 또는 판결 집행의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집행되도록 출두한다는 보장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 체포나 구금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그 누구든 그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법정의 자체 없는 판정을 받고 구금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받을 수 있도록 법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불법적 체포나 구금의 피해자였던 사람은 그 누구든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84

- (1) 형사 고발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 당한 사람들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지만 아직 재판과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규칙에서는 "미심리 수용자"라고 지칭될 것이다.
- (2)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수용자들은 무죄라고 가정되므로 무죄한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실천 방법

미결 수용자들의 특수 상황

교도소의 규칙과 규정은 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의 관리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미결 수용자들은 무죄하다고 가정되어야 하므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과 같은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지침서의 3 장에는 입소 절차가 다루어져 있다. 대다수의 수용자들이 공판 전 수용자의 신분으로 최초의 수감 경험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절차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에게 교도소에서의 첫 며칠 동안은 특히 혼란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입소 절차에서는 이 점이 참작되어야 하고 그들의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은 이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임의 구금을 방지하는 보장 조항

교도소 당국은 임의 구금을 방지하는 중요한 보장 조항을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구치 시설에 입소한 모든 사람의 구금에 대해 적법하게 허가된 영장이나 법률 문서가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는 명확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미결 수용자들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다음 번에는 언제 사법 당국에 출두해야 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교도소 당국은 또 수용자들이 법정에 적절한 시간에 신속하게 출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공판 전 구금 기간에 대한 검토

대체로 공판을 기다리는 수용자들의 구금 기간은 불확정적이고 교도소 당국 이외의 기관들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을 시한을 정해 놓고 이 시한 내에 수용자들이 재판을 받거나 석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금 명령의 합법성이 지속

적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도소 당국은 이러한 방법을 검토하기를 원할 것이다. 공판 전 수용자들이 사법 조직 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지 않도록 교도소 당국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교도소와 구금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자는 2001년 모잠비크의 교도소들을 방문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전번의 방문 이후 수용자들의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특별 보고자는 이것의 부분적 이유는 “교도소들을 순회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구금의 적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적법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 위원회들은 재판을 기다리는 수용자들을 석방하기로 판단하거나 형기를 복역했지만 벌금을 물 능력은 없는 수용자들을 보석해 줄 수가 있다. 이 위원회들은 또 16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용자들을 석방할 수도 있다.”¹⁾

온두라스와 파나마는 공판 전 수용자들이 고발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선고받을 형기(刑期)의 일정 부분을 일단 구금 장소에서 복역한 경우에는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입법했다.

법적 조언

모든 공판 전 수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독립적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별도의 규칙

교도소 직원들은 공판 전 수용자들과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 간의 법적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공판 전 수용자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7

- 1 구금된 사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는 체포 후 즉시 관할 당국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통지 받아야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합당한 설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 2 구금된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모든 사건에서 사법 당국이나 다른 관련 당국이 그에게 변호사를 지정해주어야 하며 그가 그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자산이 없다면 그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 ACHPR, 모잠비크의 교도소 이차 방문 2001년 4월 4-14일 : 아프리카의 교도소와 구금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자의 보고서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18

- 1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하고 의논할 권리가 있다.
- 2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그의 변호사와 의논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시설을 허용 받아야 한다.
- 3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이 지체나 검열 없이 완전히 비밀리에 그의 변호사의 접견을 받고 그와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란 사법 당국이나 다른 관련 당국이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법이나 법적 규정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 4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과 그의 변호사의 면담은 법집행관이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5 본 원칙에 명시된 바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과 그의 변호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속고된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한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23

- 1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에 대한 모든 심문의 기간과 심문들 사이의 간격, 심문을 실시한 공무원의 신원, 배석한 다른 사람들 등을 법에 규정된 형태로 기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 2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의 변호사가 법적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의 변호사는 본 원칙의 1항에 설명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93

아직 공판을 받지 않은 수용자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을 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그를 변호하고 비밀 지시 사항을 작성해서 그에게 건네주려는 목적을 가진 그의 법률 조언자의 접견을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임무에 대한 기본 원칙, 원칙 7

정부는 형사 고발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와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시간으로부터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의 임무에 대한 기본 원칙, 원칙 8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수감된 모든 사람들은 지체나 검열이나 엿들음이 없이 완전히 비밀리에 변호사의 접견을 받고 대화하고 의논할 적절한 기회, 시간, 설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한 의논은 법집행관이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천 방법

법적 대리인의 선임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교도소가 수행하는 역할

새로 임소한 수용자들에게는 아주 초기 단계에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하며 특히 그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그들 중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관심사는 접촉에 대한 것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법적 대리인을 아직 선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법적 위치를 논의하고 자신을 변호할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연락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관련 당국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용자들도 적절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한다.

법적 사신의 프라이버시

교도소 당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용자와 그의 법적 대리인간의 의사전달 과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와 그의 변호사의 서신은 검열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그러한 서신은 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수신된 서신은 개봉되지 않은 채 바로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발신되는 서신은 수용자가 봉인한다. 교도소 당국이 이 방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국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수신된 서신을 개봉하고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조사할 수 있다. 발신되는 편지도 마찬가지로 봉인되기 전 수용자의 면전에서 조사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국은 서신을 읽어서는 안 된다.

법적 대리인과 만날 때의 프라이버시

수용자와 그의 법적 대리인 사이의 논의를 교도소 당국이 결코 엿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접견이 교도소 직원이 유리창을 통해 접견 장면을 볼 수 있는 등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만 직원은 논의 내용을 들을 수는 없는 곳에 있어야 한다.

미결 수용자들의 관리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시민 ·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0조

- 2 (a) 고발된 사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신분에 합당한 별도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
- (b) 고발된 소년은 성인들로부터 격리시켜 가능한 한 신속히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8

구금된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신분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수감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86-91

- 86 공판을 받지 않은 수용자들은 기후상의 상이한 지역적 풍습이 유보된 가운데 별도의 방에서 혼자 짐을 자야 한다.
- 87 교정 시설의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판을 받지 않은 수용자들은 원한다면 교도 행정 당국이나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비로 외부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도 행정 기관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 88 (1) 공판 받지 않은 수용자는 자신의 의복이 깨끗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것을 입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2) 그가 교도소 제복을 입는다면 그 제복은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에게 공급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 89 공판 받지 않은 수용자는 작업할 기회를 항상 제공받아야 하지만 작업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작업에 대한 급료를 지불 받아야 한다.
- 90 공판 받지 않은 수용자는 자비나 제삼자의 경비로 서적, 신문, 필기구 등이나, 법의 집행과 교정 시설의 보안과 질서와 양립될 수 있는 다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91 공판 받지 않은 수용자는 그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청구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주치의나 치과의사의 접견을 받아 치료를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미결 수용자들의 다른 신분

교도소는 대개 교도소 당국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한 한 가지 결과는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성인이건 소년이건,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건 공판 전 수용자건 간에 유사한 방식의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교도 행정 기관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정의의 구현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는 못한다. 공판 전 수용자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 당국은 그들의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뿐이지 그들이 그 외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로부터의 격리

공판 전 수용자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과는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많은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그러한 격리의 직접적 결과는 공판 전 수용자들의 상황이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점이다. 그들은 가장 과밀화된 최악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교도소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무죄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구금된 상황이 적어도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의 상황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도소가 제공해야 하는 것

공판 전 수용자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는 그들이 언제 자신의 의복을 착용할 수 있고 음식과 서적과 다른 자료들과 접촉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의 실용적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작업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작업을 할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

공판 전 수용자들이 장기간이나 불확정적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교도소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한다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보안 수준은 미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유죄 선고를 받았건 재판을 기다리고 있건 모든 수용자들은 각자에게 적절한 보안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많은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은 특수 보안 범주에 소속되지만 공판 전 수용자들은 모두 고도의 보안 상황 속에 수용되어야 하는 듯한 처우를 받고 있다. 사실은 상황이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 전 수용자들도 각자가 제기하는 위험도를 평가하여 처우를 해야 한다. 비교적 사소한 범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 속에 수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재판 없이 구금 중인 모든 수용자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94-95

94 채무로 인한 수감이나 그 밖의 비형사적 사법 과정에서 법정의 명령에 의한 수감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제한이나 가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 대한 처우는 재판 받지 않은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보다 덜 우호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도 작업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유보 조항이 있다.

95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9조의 규정에 대한 편견이 없이, 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거나 수감된 사람들도 C항 I절과 II절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A항 II절의 관련 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 단 어떤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교화개선이 어떤 면에서든 적절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금 중인 이 특수 부류의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실천 방법

관리상의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교도소는 주로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형사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구금하는 장소이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민사 고발을 받았거나 다른 행정적 이유로 사람들이 구금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과 그들의 법적 대리인과 다른 공적 인물과 접촉할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법 이민과 경계적 망명자

현대에는 이러한 수용자들의 가장 명확한 예는 어떤 국가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정치적 망명을 원하기 때문에 구금된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고발되었거나 형사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교도소 당국의 보호에 맡겨지는 경우에는 그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형사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의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체제

몇 가지 정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란 아동이 저지를 행위가 형사법 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연령을 가리킨다. 이 연령은 국가들마다 크게 다르다. 마찬가지로 아동이 교도소 조직에 수감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법적 정의도 국가마다 다르다. 또 교도소 내에서도 소년들이 성인들과 동일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연령도 교도소마다 다르다.

국제법의 입장

국제법은 누구를 아동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조

… 아동이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거해 성년이 18세보다 이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형사 사법에 대한 국제 인권 문서들도 소년에 대해 위와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UN 규칙, 규칙 11

(a) 소년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18세 미만의 소년은
교도소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은 그 누구든 교도소의 보호 관리에 맡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소년들이 구금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형사 사법 조직의 일부인 기관보다는 복지 기관의 보호에 맡겨져야 한다.

소년 교도소는 죄후의
수단

0| 지침서에서 설명된 원칙들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적용된다. 그 위에 소년 수용자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특수 사항들이 있다. 교도소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에 위협이 되는 개인들을 수용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거의 없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다른 사용 가능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여러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면 한 소년이 형사 사법 조직에서 다루어지는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그가 향후 범죄 행위에 가담할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

소년 구금의 적법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최근의 두 가지 경향이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소년 비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고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고발 없이도 구금하는 방법이 점증하는 '거리를 해매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

는 아동이 합법적으로 교도소에 수용될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 이 지침서의 11장에서는 교도 행정 기관에 구금되도록 맡겨진 모든 사람들이 적법하게 허가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을 확인할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이 점은 아동과 소년을 다른 취약 집단들과 함께 다루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소년 복지에 대한 강조

소년을 교도소에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생활의 강제적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교육과 인성 개발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 수용된 소년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돋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출생 기록 부재 상황의 문제점

여러 국가들에서는 기록의 부재 때문에 한 사람의 정확한 연령을 알기가 어렵고 소년들을 성인 교도소에 입소시키기 위해 자료를 허위로 기입한 보고서도 있다.

청소년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교도 행정 기관의 보호 아래 있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수용자들이 21세가 될 때까지는 성인 수용자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또 일본 같은 국가들에서는 청소년 교도소를 이용해 이 기간을 24세까지 연장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교육과 발달상의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들보다 더 나이 많고 더 교활한 범법자들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7조 (1)항

당사국들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b) 어떤 아동도 불법적으로나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구금, 수감은 법에 따라야 하며 이것은 가능한 한 최단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을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존중하여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그 연령층의 필요를 참작하여 대우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성인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서신과 접견을 통해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적 도움이나 다른 적절한 도움을 즉각 받을 권리와 법정이나 다른 독립되고 공정한 관할 당국 앞에서 그가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적법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와 그러한 행동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규칙 13

- (1) 재판 중의 구금은 가능한 한 최단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 (2)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재판 중의 구금은 세밀한 감독, 집중 치료, 또는 가족적 환경·교육적 환경·가정에 배치하는 등 대안적 조치로 대체되어야 한다.
- (3) 재판 중에 구금되어 있는 소년들은 국제 연합이 채택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보증 사항들을 누릴 권리 를 가진다.
- (4) 재판 중에 구금되어 있는 소년들은 성인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에 구금되거나 성인들이 수용된 시설인 경우에는 별도의 구역에 구금되어야 한다.
- (5) 소년들은 구금 중에도 돌봄과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성격 등으로 인해 그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모든 필요한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의학적, 신체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규칙 19

- (1) 소년을 한 기관에 수용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최단기 의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어야 한다.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1

- (1) 소년 범법자에 대한 기록은 엄중한 기밀로 보관되어야 하며 제삼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기록은 현재의 사건의 관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정당한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6

- (1) 교정 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의 교육과 처우의 목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돌봄, 보호, 교육, 직업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 (2) 교정 시설의 소년들은 돌봄과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령, 성별, 성격 등으로 인해서나 그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모든 필요한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의학적, 신체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3) 교정 시설의 소년들은 성인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에 구금되거나 성인들이 수용된 시설이라면 별도의 구역에 구금되어야 한다.
- (4) 교정 시설에 수용된 소녀 범법자들은 개인적 필요와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 그들은 결코 소년 범법자보다 더 낮은 정도의 돌봄, 보호, 지원, 처우, 교육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6) 교정 시설에 수용된 소년들이 그곳을 출소할 때 교육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놀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들에게 적절한 학문적 교육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경우에는 직업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부처간, 부서간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7

- (1)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과 관련 권장 사항들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는 소년 범법자들을 포함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소년 범법자들의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 (2) 소년들의 연령, 성별, 성격 등에 따라 상이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에 규정된 관련 원칙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9

- (1) 중간시설, 교육원, 주간 훈련소 등의 중간 시설들이나 그밖에 소년들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지원할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규칙 11

본 '규칙'에서는 다음의 정의들이 적용된다.

- (a) 소년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어떤 연령 미만의 아동에게서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b) 자유의 박탈이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보호 상황에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사자는 사법 기관, 행정 기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의 명령에 따라 마음대로 이러한 장소에서 떠나도록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천 방법

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들

교도소 직원들은 중대한 성인 범법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유를 박탈당해야 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아동과 소년을 둘보는 것이 그들의 임무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소년들은 복지 기관이나 사회 복지 기관에 맡겨져야 한다.

학대를 받기 쉽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몇몇 국가들에서는 다수의 아동들과 소년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 행정 당국은 그들의 연령과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그들을 둘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특별 처우에는 두 가지 주요

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아동과 소년은 성인보다 더 약하므로 보다 나이든 수용자들이나 심지어는 직원들로부터도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둘째 이유는 그러한 소년들은 대체로 긍정적 영향, 훈련, 교육적 기회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도 행정 기관에 맡겨진 아동과 소년은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고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의 기술

소년을 위한 교정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소 직원들은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사용해야 할 기술들 중 많은 것은 성인 수용자들을 대하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는 매우 다르다. 많은 직원들은 성인 수용자들을 대하기를 선호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장기 수용자들을 대하는 것이 교도소의 진정한 업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소년들을 대하는 업무는 자격을 덜 갖추었거나 성인 수용자들을 대하는 보다 힘든 업무에 대처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한 쉬운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릇된 인식이다. 소년 수용자들을 대하는 업무는 특별한 일련의 기술을 요구한다. 직원들은 보안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소년들이 성숙해지고 인생에서 성공하게 해줄 개인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과 결합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소년들 중 다수는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가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년 교정 시설에서 근무할 직원들은 특별히 선정되어야 하고 그들의 힘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훈련받아야 한다. 그들은 또 소년 범법자들을 대하는 업무가 초래할 신체적, 감정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도 필요로 한다.

복지와 교육의 필요성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과 소년을 구금하는 기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행이 있다. 이러한 관행의 많은 부분이 소년들의 특정한 복지와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교도 행정 기관 중 아동과 소년을 책임진 기관은 시민 사회에서 소년 복지와 교육을 담당한 다른 행정 부서들과 긴밀한 기관간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외부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소년 교정 시설의 체제는 수감 생활의 강제적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강조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이러한 업무는 시민 사회의 소년을 위한 과정과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 지역 학교와 대학에서 교사들과 다른 근무자들이 와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년들에게 수여되는 각종 증명서는 교도 행정 기관이 아니라 지역 교육 센터가 수여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보안 상황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소년들이 주간 동안만이라도 교도소 밖에서 교육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

교도 행정 기관은 소년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교도소 밖에서 소년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부 기구들과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

소년 수용자와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소년 수용자는 혼기 중 가정을 잠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야 한다. 가족에게는 가능한 한 자주 교정 시설을 방문하고 편지와 전화로 접촉을 유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소년 수용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교도 행정 기관은 가족의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접견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프라이버시와 스스럼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에게도 자녀가 구금 중 받는 처우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석방과 사회 재통합

많은 국가들에서는 소년 수용자들의 상당 부분이 수감 기간 전에, 또는 수감 기간의 결과로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교도 행정 당국은 가족과의 관계를 재확립하는 데 부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년들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의 주요한 목적은 소년들이 처음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사회 상황 속으로 소년들을 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적절한 재적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관련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테헤란 소년 교정 사회 복귀 센터의 직원들은 이 센터를 출소하는 소년들이 가정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건물들을 인수하여 그것을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새로 출소한 소년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 센터의 직원들로부터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체제

여성 수용자들은 극소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도 행정 기관에서는 여성 수용자의 비율은 2% ~ 8%이다. 이 적은 비율로 인한 한 가지 결과로 교도소와 교정 기관이 남성 수용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 조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 보안, 그 밖의 모든 시설에까지 적용된다. 여성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 시설은 대개 일반적인 남성용 시설에 부가되는 것이다.

마약 퇴치법의 효과

여러 국가들에서는 강력한 마약 퇴치법이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의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여성 수용자 수의 증가 속도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었다. 영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이 법 때문에 외국인 수용자들의 수가 증가했다. 현재 영국에서 외국인 수용자들은 여성 수용자들 중 불균형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수용자들은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여성 수용자들의 상황은 남성 수용자들의 상황과 매우 다르므로 여성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교도소에 보내어진 여성은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고 치료받지 못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수감 생활이 여성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들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은 비폭력적 절도범이나 마약범으로 교도소에 수용된다. 그들은 이른바 '재산권 관련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 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범죄인 경우가 많다. … 남성과 대조적으로 여성 수용자들은 편모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여성들이 재범자가 될 가능성은 낮고 그들 중 1/3 ~ 2/3가 교도소에 수용되기 전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다.¹⁾

가족에 대한 책임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주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것은 여성이 교도소에 보내어질 때에는 뒤에 남겨진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보내어지면 흔히 어머니가 자신의 책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까지 떠맡게 된다. 어머니가 교도소에 보내어지면 가족과 함께 남겨진 아버지는 부모의 의무를 모두 떠맡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가족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많은 경우에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은 여성 수용자들이 자녀들과 의미 있는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어린 자녀의 문제는 특히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1 줄리타 랭그루버,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의 여성 - 2000년 4월 범죄의 예방과 범법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제 10 차 UN 회의 도중 열린 연수회에서 한 기조 연설. HEUNI, 빈 1 149

학대의 방지

여성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그 신체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항상 남성 수용자들과는 별도로 수용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감독만 받아서도 결코 안 된다. 3 장의 성적 학대에 대한 조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임신한 여성

임신한 여성은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소에 보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과 아기를 보육하는 동안 그들을 위한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실제의 출산 과정 동안 보안상의 제한을 적용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임신 중인 여성이 교도소 내에서 출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세계 인권 선언, 2조

모든 인간은 민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그 밖의 견해, 국가적 출신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그 밖의 신분 등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3조

본 규약의 당사국들은 남성과 여성이 본 규약에 명시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조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을 비난하고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자체 없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약속한다.

- 자국의 헌법과 다른 적절한 관계법에 남녀 평등의 원칙이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원칙을 포함시키고 법과 다른 적절한 수단들을 통해 이 원칙을 실제적 실현을 보장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와 다른 조치들을 채택한다. 다른 조치들 중에는 적절한 경우의 제재 조치도 포함된다.
-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할 국가 법정과 그 밖의 공공 기관을 통해 여성은 어떤 차별 행위로부터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행위나 차별 관행에 관여하는 것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이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 사람, 기관, 기업 등에 의한 여성 차별을 폐지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f) 여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존의 법, 규정, 관습, 관행 등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입법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g) 여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든 국가적 형사 규정을 폐지한다.

UN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 선언, 2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지만 다음의 것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c) 그 폭력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국가에 의해 수행되거나 관용되는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

UN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 선언, 4조

(i)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 수사, 처벌하는 정책의 수행을 책임진 법집행 관들과 공무원들이 여성의 필요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원칙 5, (2)항

오로지 여성, 특히 임신한 여성과 아기가 있는 어머니, 아동과 소년, 노령자, 병자, 장애자 등의 권리와 특별한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되고 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들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8

상이한 범주의 수용자들은 성별, 연령, 범죄 기록, 그들의 구금에 대한 법적 이유, 그들의 처우에 필요한 요소 등을 감안해서 각각 별도의 기관이나 별도의 구역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a) 남녀 수용자들은 가능한 한 별도의 기관에 구금되어야 하고 남녀를 모두 수용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여성에게 할당된 건물과 구내 전체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23

- 여성 교정 시설에는 출산 전후에 필요한 모든 보살핌과 치료에 필요한 특별 시설이 있어야 한다.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이가 시설 밖의 병원에서 태어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도소에서 아기가 출생하는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에 그러한 사실이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 젖먹이 영아가 어머니와 함께 교정 시설에 남아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근무하는 육아실이 설치되어야 하고 영아들은 어머니가 보살피지 않는 시간에는 이곳에 맡겨져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규칙 53

- 남녀 모두를 수용하는 기관에서는 여성 전용 구역은 이 구역 전체의 열쇠들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여성 교도관의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

- (2) 남성 직원은 그 누구도 여성 교도관을 동반하지 않고는 교도소 내 여성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 (3) 여성 수용자들은 여성 교도관만 보살피고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성 직원들, 특히 의사와 교사가 여성 교도소나 교도소 내 여성 전용 구역에서 전문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실천 방법

직원들에게는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

수감 생활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 대한 영향과는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주로 직계 가족과 다른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여성의 뒤에 남겨두고 온 가정의 상황이 남성과는 다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수감된 여성은 가족에게 벼림받을 가능성도 높다. 여성 수용자들을 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은 차별 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20명의 수용자들 중 19명 꼴이 남성이다. 이것은 교도소들이 남성의 관점에서 관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이것은 절차와 프로그램이 수용자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인구의 필요를 위해 계획되고 그 다음에는 여성의 필요를 위해 조정된다(때로는 조정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몇 가지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게 된다.

시설

여성이 차별되는 첫 번째 영역은 시설이다. 어떤 교도소 조직들에는 여성 수용자들만을 위해 사용되는 교도소들이 소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여성들 중 다수가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시설에 수용되게 되어 가족과의 접촉이 훨씬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이 자녀들과 다른 부양 친척들을 혼자서 돌보거나 주로 돌보는 경우에는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들은 남성 수용자들을 위한 대규모 교도소에 부속된 소규모 시설에 수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며 여성들이 사용해야 할 시설이 다수의 남성 수용자들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시설의 이용과 감방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도 보안상의 이유로 더욱 더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명백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보안은 필요 이상으로 엄중에서는 안 된다

여성이 교도소 시설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이 초래하는 한 가지 결과는 여성 수용자들이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도에 대한 평가에 따른 정당한 보안 등급보다 더 엄중한 보안 등급 아래 수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등급의 분류 평가 자체가 전형적인 남성 수용자의 모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활동에 대한 동등한 권리

여성의 수가 적거나 제한된 시설 때문에 여성 수용자들의 활동은 남성보다 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기술 훈련의 기회도 더 적다. 작업 기회도 여성의 전통적인 작업으로 생각되는 바느질이나 청소 등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교도 행정 당국은 여성도 남성 수용자처럼 교육 과정과 기술 훈련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육 시설이나 운동 시설의 사용 문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교도소 내에 시설이나 직원이 부족하다면 여성 수용자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기관이나 비정부 기구를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여성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은 남성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해 계획된 것이어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

어머니인 수용자에게 남겨두고 온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가능할 때마다 항상 여성 수용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교도소를 떠나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허용해야 한다. 자녀들이 교도소를 방문할 때에도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접촉도 허용해야 한다. 모자간의 접견에서는 항상 신체적 접촉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접견이 어떤 형태의 칸막이나 물리적 장벽으로 모자를 격리시키는 폐쇄된 접견이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접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접견이 하루 종일 지속되게 해주어야 한다. 이 지침서의 8장에 설명한 장기적 가족 방문제도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접견자를 수색하는 보안 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자녀는 병원에서 출생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교도소에 수용해야 한다면 그들에게는 시민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관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출산할 시간이 된 여성은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전문적 의료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아기에게는 출생지가 교도소로 기재되는 불명예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생 증명서에는 출생지로 교도소가 아닌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보안상의 제한 조치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취해져야 한다.

임신한 여성의 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도 행정 당국은 출산과 관련된 문화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유아를 대동한 어머니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들 중 어린 유아가 떨린 어머니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것이다. 여러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어머니에게 교도소에서 신생아를 데리고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모자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설에는 수유하는 어머니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방법이 어머니가 일정한 시간에만 아기를 볼 수 있는 별도의 보육 시설에 아기를 맡기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유아를 끌리기 위한 나이

유아를 수감된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내어야 할 적절한 나이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모자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이 가능한 한 오래, 아마도 어머니의 형기가 끝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교도소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비정상적 환경이라는 반대의 주장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아동은 몇 달이 넘으면 어머니와 함께 지내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실제로는 어떤 교도 행정 기관들은 교도소에 수용된 어머니가 자녀가 생후 9 개월, 18 개월, 또는 아동이 다른 곳이 없는 경우 최장 4 년 동안이나 그 이상까지 자녀를 데리고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른 어떤 곳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가?

아동이 교도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없는 경우 교도소 당국은 아기를 가족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부모 없는 아동을 돌보는 기관에 맡기는 방법 중 좋은 방법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 적절한 방법에 대한 결정은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결정을 교도 행정 기관이 단독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다른 관할 당국과 협력하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형사법은 덜 중대한 범죄, 즉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기간이 5년 이하로 선고될 만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어머니에게는 가장 어린 자녀가 8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복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단계가 되면 이 선고가 집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선고를 검토한다.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요소는 그 여성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점이다.

교도소에서 성장하는 아동

유아가 교도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가 거주하는 환경은 모자 모두에게 가능한 한 정상적인 것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교도소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동의 발달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또 석방의 때가 오면 모자를 지원하는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다른 부양 친척들

여성은 자녀 아닌 다른 부양 친척을 유일하게 돌보거나 주로 돌보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 교도 행정 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건강관리

0| 지침서의 4장에는 수용자들의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다. 여성 수용자들은 특수한 건강상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도 행정 당국은 이것을 인식하고 보살펴주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여성 수용자는 여간호사와 여의사의 간호와 진찰을 받아야 하며 여성 건강관리 문제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자녀에 대한 근심이 여성 수용자들의 걱정과 스트레스의 큰 이유이다. 이것이 그들의 정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수감 생활을 남성의 수감 생활보다 심리적으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에는 이 점도 반영되어야 한다.

여자 교도소의 직원 배치

여성 수용자들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환경에서는 특히 상처받기 쉽다. 그들은 또 항상 남자 직원들의 신체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국제 문서들에는 여성 수용자

들은 여성 직원들이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자 직원이 여성 교도소에 채용된다면 그들이 단독으로 여성 수용자들을 관리해서는 안 되며 항상 여성 직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수색

0| 지침서의 5장에는 수용자들에 대한 수색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 여성 수용자들을 수색할 때는 직원들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신체 수색 도중에 수용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등 보편적인 예의를 지킬 필요성은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에 특히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석방 준비

수용자들이 일반 사회로 석방될 때 교도 행정 기관이 대비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 지침서의 7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석방 예정인 여성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교도소 당국은 지역 사회의 지원 기관과 비정부 기구와 긴밀히 협력해서 수용자였던 여성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교도소에 수용된 여성들에게는 특히 가치 있는 일이다.

체 제

장기 수용자들의 증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 중 과반수가 비교적 단기형을 복역하고 있다.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평균 형기가 몇 달에 불과하고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1, 2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법정에서 그보다 훨씬 더 긴 형기를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많은 교도소 조직에서는 장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들이 수용자의 총수에 비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전체와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사용 가능한 자원 중 상당한 양을 소비하고 있다.

경의 장기 수용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의하려고 하자마자 즉시 문제가 제기된다. 교도소 조직들 중에는 6개월 이상을 복역하는 사람을 모두 장기 수용자로 분류하는 곳도 많은데 예를 들면 몇몇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교도소 조직들이 그러하다. 반면 동유럽의 많은 교도소 조직들에서는 장기 수용자란 10년 이상을 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에는 정상적인 수명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인 수백 년의 형기를 복역하고 있는 수용자들도 많다.

사형 폐지의 영향

몇몇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장기 수감의 정의가 사형의 폐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형 폐지의 결과로 특히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종신형 선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장기 수용자라는 이 새로운 부류는 교도 행정 기관에 완전히 새로운 곤경을 초래했다. 이 곤경은 현재 사형이 폐지된 몇몇 동유럽 국가들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수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법정은, 예전이라면 사형을 선고받았을 수용자들에게 이제 최소한 25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 중 처음 10년은 독방에 감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사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장기 격리의 선고나 이 수용자들을 특수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유형지로 보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

종신형은 사형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 부과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사제재 조치이다. 사형 제도가 없는 경우 종신형은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되어 최악의 응보를 내리는 선고로 간주될 수가 있다. ‘종신형’이라는 용어가 국가들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 용어의 한 가지 공통된 의미는 그러한 선고가 부정기적(不定期的)이라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사망할 때까지 수감되는 수용자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고 압도적인 다수가 흔히 어떤 형태의 감독을 받는 형식으로 사회로 석방될 것이므로 종신형이라는 형기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 한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부정기적 형기의 관리

종신형의 부정기성 때문에 교도 행정 기관이 그러한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점을 야기된다. 그들의 석방일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용자들이 결국은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종신형이 제기하는 특별한 난관은 여러 국가들의 헌법에서도 인식되어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헌법에 종신형의 선고가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1989년 포르투갈 헌법 30조 (1항)) 스페인에도 종신형 제도가 없다. 스페인의 형사 이론에서는 종신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스페인 헌법은 교도소가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에게 개방된 사회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교화 개선이 되었음'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할 의미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신형을 선고한다면 그러한 헌법의 규정이 부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도 형법에서 종신형의 선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종신형은 또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남미의 여러 국가들의 헌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모든 장기 수용자들이 특히 위험한 인물은 아니다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을 관리할 때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 수용자들은 모두가 위험 인물이라는 자동적 가정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 예를 들면 종신형 수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부류의 수용자들보다 더 많은 규율 위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 와 반대로 그들이 훨씬 단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들보다 더 훌륭한 규율 준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수용자들이 단지 형기가 길다고 해서 더 파괴적이거나 교도소의 원활한 관리에 위협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증거는 없다. 종신형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의 평균 연령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다. 그들은 전에는 한 번도 난폭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경우도 있다. 그들의 피해자는 그들에 전에 알던 사람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기 수용자들의 최종 석방일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들은 어떤 종류의 말썽도 야기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 이유로 그들은 더 젊거나 단기형을 복역하는 다른 부류의 수용자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위험도가 높은 수용자

그러나 장기 수용자와 종신형 수용자들 중 일정한 비율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그들 중에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탈출한다면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수용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고 직원들과 다른 수용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교도 행정 기관의 책임이다. 이러한 수용자들을 예의바르고 인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전문적 교도소 관리자들의 큰 과제이다. 이 주제는 5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수용자

1 D. 밴 질 스미트 "종신형의 폐지?" (2001) 3 처벌과 사회 299-306

교도소 조직이 테러리스트나 국가의 적으로 규정된 수용자들을 관리해야 할 때 또 다른 난점들이 발생한다. 대다수의 수용자들과는 달리 이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나 교도 행정 기관의 합법적 권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관리하는 문제는, 그들이 때로 정치적 지명도나 국민의 지명도가 높아서 그

들을 처우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수감 생활에 대응하는 방식이 모두 대중 매체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는 사실 때문에 더 복잡해진다. 대중 매체에 이러한 문제가 보도되면 일반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교도 행정 당국자들의 업무가 정치적 필요에 따른 요구 사항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수용자들을 예의 바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압력에 교도 행정 기관이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그 기관의 전문성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교도소 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

그러나 종신형 수용자와 장기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 형기나 불확실한 석방일로 인해 수용자의 정신 건강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도 행정 당국자들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의식하고 수감 생활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형기를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국제 규약들과 인권 문서들 자체는 종신형이나 다른 장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거의 없다.

기회의 제공

장기수의 처우에 관한 주요한 국제 문서는 'UN 종신형에 대한 권장 사항'이다.²⁾ UN은 국가가 종신형 수용자들에게 "의사소통과 사회적 교류를 할 기회"와 "보수를 받는 작업, 공부, 종교·문화·스포츠·그 밖의 레저 활동 등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기회가 종신형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려면 다른 모든 장기 수용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럽 이사회(1977), 장기수의 처우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수용자들에게 "유용한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들을 "외부 세계로 석방되어 복귀할 가능성에 유의해서 처우해야 한다"³⁾고 주장하고 있다.

실천 방법

이 지침서에서 설명한 원활한 교도소 관리에 대한 모든 규정들은 종신형 수용자나 다른 장기 수용자들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에게 특히 관계가 있는 다음의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선고를 받은 후의 첫 단계 계획

2 국제 연합(1994), 종신형, 빙, 국제 연합 발표

3 유럽 이사회(1977), 장기수의 처우, 스트拉斯부르, 유럽 이사회 발표

모든 수용자들은 개인들이며 교정 당국은 그들을 개인으로 처우해야 한다. 장기수들을 위해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수용자의 형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첫 단계로서 일차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지침서 5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매우 오랜 형기를 복역하는 수용자들을 먼저 적응 시설로 테러가도록 하는 사법 관할 지역들도 많다. 그러한 시설의 목표는 이 수용자들이 일상적인 교도소 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들은 이 시설에서 몇 달을 보낸 뒤 교도소로 이송된다.

위험도 평가

몇몇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일차적 평가 후 곧 형기 관리 과정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는 수용자의 전과, 가족과 배경, 과거의 직장, 알코올과 마약 등의 문제, 경찰·복지 기관·보호 관찰 기관의 보고서 등의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서 수용자의 인물평을 작성한다. 이 인물평에 근거해 형기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계획서에는 수용자 자신, 다른 수용자, 직원, 일반 시민 등에 대한 각 수용자의 위험도 평가가 포함된다. 이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검토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반 시민의 보호이다. 위험도 평가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높지도 더 낮지도 않게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형기 계획서에는 해당 수용자가 복역 기간 동안 참여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 교육, 그 밖의 활동

01 지침서의 7장에서 설명한 작업, 교육, 그 밖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종신형 수용자를 포함한 장기수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사실 그들이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시간의 길이를 감안하면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들보다 장기 복역수들에게 이러한 활동에 대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종신형이나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용자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들의 교화 개선 과정을 더 크게 지원해야 한다.

격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02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의 형기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격리 수용하는 것은 교도소의 운영상 정당화될 수 없다. 그와 반대로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작업에 깊이 몰두하게 하는 것이 좋은 관리 관행이다.

가족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

장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감정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그는 가족과의 관계와 접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접촉을 허용할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의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나 다른 가족들도 교도소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접촉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8 장에서 설명한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장기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는 특히 더 충실히 적용되어야 한다.

제3자적인 발견

위에서 설명한 여러 형태의 일차적 평가와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그러한 것들이 보안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도 있는 소수의 장기 수용자들을 찾아내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도 행정 당국은 일차적 평가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교도소 내에서 반드시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 대다수의 장기 수용자들과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도 있는 장기 수용자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여러 국가들에서는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장기 수용자들이 비교적 장기형을 복역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안 정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교도소로 이송하고 있다.

장기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장기 수용자들의 보안상 분류와 형기 계획을 둘 다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검토는 단기 수용자들의 경우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종신형에 대한 UN 문서는 “교육과 처우 프로그램에는 수용자들의 행동의 변화, 개인간의 관계, 작업과 교육 목표에 대한 동기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보안 수준이 낮은 교도소로의 이송

대부분의 장기수들은 석방 예정일로부터 몇 년 전에는 보안 정도가 낮은 교도소로 이송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최종 준비 단계로서 때때로 교도소를 떠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 기간은 며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형기의 후기에는 가석방 위원회나 다른 석방 관련 기관이 감독하는 경우가 많다.

노령 수용자

노령 수용자 수의 증가

어떤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형기가 길어진 결과로 교도 행정 당국자들이 점증하는 수의 노령 수용자들의 필요에 대응해야만 하게 되었다. 또 어떤 국가들이나 주에서는 종신형이나 장기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교도소에서 노령화되는 수용자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기동성의 상실이나 정신 기능의 감퇴로 인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시설들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노령 수용자의 문제점

교도 행정 기관은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나 의료 문제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노령 수용자를 위한 전문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부류의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은 이 지침서 4 장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가족과의 접촉의 결렬

장기형을 복역하거나 범죄에 관계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가족과의 접촉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때문에 노령 수용자들이 형기를 마칠 때쯤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돌아갈 가족도 없고 일하기에도 너무 늙어버렸을 수도 있다. 교도 행정 기관들은 이러한 수용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외부 기관들과 신중하게 협력해야 한다.

체 제

사형 선고가 감소되고 있다

전 세계의 약 3분의 2에 이르는 국가들이 현재 사형을 폐지한 상황인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서양 연안의 리스본에서 태평양 연안의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럽 이사회 회원국들은 사형을 이미 폐지했거나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다. 국제 규약들과 다른 인권 문서들에는 그러한 규약이나 문서의 당사국들이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형수 감방의 수용자들

아직도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교도소 당국이 대개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소 과정이 매우 오래 걸려 수용자들이 여러 해 동안 사형수 감방에 수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처형을 일시 중지시킨 국가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미 언도 받은 사형 선고가 감형된 경우는 없었다.

사형수와 직원에 대한 배려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을 돌보는 책임은 관계 직원에게는 힘든 임무이다. 교도소 당국은 그러한 수용자들을 인도적으로 예의 바르게 치우할 특별한 책임과 이러한 부담이 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국제 문서들은 명확히 사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2차 선택 의정서

본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성의 증진과 인권의 점진적 발달에 기여한다고 믿고,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6조

모든 인간은 생명을 누릴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임의로 그의 생명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사형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발효 중인 법에 따라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선고되어야 하고 이러한 선고는 본 규약과 민족 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대한 협약의 제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사형은 관할 법원이 내린 최종 재판에 따라서만 집행될 수 있다.

- (5) 사형 선고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될 수 없고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 (6) 이 조의 어떤 항목도 현 규약의 어떤 당사국이 사형의 폐지를 지연하거나 방지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사형에 직면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UN 규약, 9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고통만을 가하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실천 방법

예의와 인도적 챠우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에 관해 교도 행정 기관이 직면한 주요 과제들 중 하나는 처형을 기다리는 개별적 수용자들의 관리와 사형을 집행하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정치적 입장 사이에 명확한 구별을 해야 할 필요성이다. 교도소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들 중 하나는 고발 내용, 범죄, 선고에 관계없이 모든 수용자들을 인도적으로 예의바르게 처우하는 일이다. 사형이 집행될 수용자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 안에서 이동 할 때 불필요하게 제약을 받거나 가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형수의 권리

0| 직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선고에 대한 상소는 어떤 것인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많은 교도소 조직들에서는 사형수들은 다른 모든 수용자들로부터 격리되어 혼히 사형수 감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수용되고 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경우 독방 구금이라는 형태로 격리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동일한 법적 위치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공동 감방에 수용되기도 한다.

자동적 격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원활한 교도소 관리의 면에서 보면 그러한 수용자들을 습관적으로 작업,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수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처해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처벌을 해서는 안 되며 교도 행정 당국은 사형수 감방 현상이라고 혼히 알려진 정신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상소 과정 때문에 초래되는 수도 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러한 수용자들도 다른 수용자들과 동등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적절한 상황에 수용되어야 한다. 다른 평가 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상황과 각 수용자가 제기하는 위험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형수에게는 특별 상황이 필요하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레나다의 리치몬드 힐 교도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도, 고도 보안이 필요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된 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

동등한 챠우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도 일반적 수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들이 음식, 건강 관리, 위생, 운동, 다른 수용자들과의 교제 등의 문제에서 더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변호사와 접촉할 권리

교도소 당국은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이 유죄 선고나 형(刑)에 관한 상소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도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접촉과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를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접견인

0| 지침서의 8장에서 직원들이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교도소 직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을 접견하러 오는 가족과 친지들을 특히 세심하게 대해야 한다.

직원들은 특별히 선정되어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을 매일 대하고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특별히 선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대체로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특수 교육, 특히 그들의 업무의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위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처형에 대한 반응

어떤 교도소 내에서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것은 여러 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영향은 처형 날짜가 확정되자마자 감지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이 영향은 증가할 것이고 처형이 있은 후에도 얼마 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교도소 당국은 사형 집행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체 제

모든 수용자들에 대한 공정한 개우

전통적으로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집단 내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처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은 관행상으로는 교도소들이 대개 수용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주요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집단 출신의 성인 남자 수용자들의 편익에 따라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 치침서의 12장에서는 소년과 아동 수용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을 다룬 바 있으며 13장에서는 여성 수용자들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자이에 대한 인식

이런 저런 이유로 다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부류의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종, 민족, 사회적 출신, 문화, 종교, 성적 성향, 언어, 국적 등이 될 것이다. 교도소의 규칙과 규정에는 수용자들이 이러한 이유들이나 그 중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위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 어느 하나 때문에 어떤 수용자에 대해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차별의 위험

소수 인종 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교도소라는 폐쇄된 상황에서는 차별이 초래하는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 교도 행정 당국은 직원들이나 수용자들 가운데 소수 집단을 차별하는 하위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방지할 책임이 있다. 교도소 밖의 지역사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에는 항상 더욱 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차별을 퇴지할 의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들 중 많은 부분이 교도소 사회에도 반영되고 있다. 교도소는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곳이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나 직원 중 어떤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차별에는 개인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기관에 의한 차별도 포함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세계 인권 선언, 2조

모든 인간은 민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그 밖의 견해, 국가적 출신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그 밖의 신분 등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종교나 신념을 바꿀 자유와 훈자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이나 사적으로, 그의 종교와 신념을 가르침, 실천, 예배, 계율의 준수 등으로 표명할 자유도 포함된다.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 집단이 존재하는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동일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거나 그들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거나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해서는 안 된다.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것과 인종, 피부색, 국가적 출신이나 민족적 출신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의 향유에 있어 평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a) 법정과 모든 다른 사법 집행 기관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b) 정부 관리나 개인, 집단, 기관이 가하는 폭력과 신체적 상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신변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이 원칙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나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나 그 밖의 견해, 국가적·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그 밖의 신분 등에 대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어떤 주어진 국가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1) 외국인 수용자들에게는 그들이 속한 국가의 재외 공관이나 영사관의 직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 (2) 해당 국가에 재외 공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국가의 국민인 수용자들과 난민, 무국적자 등에게도 그들의 권익을 책임진 국가의 재외 공관 직원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 기관이나 국제 기관의 직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3) 어떤 수용자에게도 그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실천 방법

차별에 대한 감시

수용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일자리를 할당한다든가 하는 문제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수용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일자리로는 주방이나 교도소 도서관의 일자리를 들 수 있다. 교도소 관리자들은 이러한 일자리에 소수집단 출신의 수용자가 더 적게 배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교육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어떤 수용자들이 최상의 주거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지도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 수용자들에 대한 정계 조치의 빈도를 소수 집단별로 분석한 것도 중요한 측정 수단이 된다.

차별을 하지 않는 관행의 강화

소수 집단 출신의 직원

차별을 감소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교도소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서로 다른 소수 집단 출신으로 채용하여 고위직으로 승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지침서 2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모든 직원들은 교육 기간이나 근무 기간 동안 상이한 부류의 수용자들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공정적 조치를 취하기

동등한 처우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동등한 소수 집단의 특별한 필요가 충족되도록 배려하기 위해 공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종교적 이유나 문화적 이유로 어떤 수용자들에게는 특별한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한 관행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조직이 더 잘 운영된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소수 집단은 상이한 종교적 필요를 가진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사적인 기도나 공동 기도, 위생, 의복 등의 문제에서 항상 자신의 종교의 교리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수용자

최근 몇 년 동안 여행이 증가하면서 교도소에 수용된 다른 국가의 국민의 수가 뎅달아 증가했다. 외국인 수용자들은 충족시켜 주어야 할 특정한 필요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한 필요성 중 가족과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지침서 8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모든 수용자들이 교도소의 규칙과 규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은 3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교도 행정 당국은 외국인 수용자들이 자국으로 이송되는 문제에 관한 조약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사회 재통합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수용자가 복귀할 특정 사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협의

01 지침서의 7장에서는 지역 시민 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도록 권장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단체들에는 지역사회 내 소수 집단의 대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도소 수용과 구금에 대한 대안

17

여러 교도 행정 당국은 발의된 규정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수 집단의 대표자와 협의한다든가 적절한 정책 수립을 도와줄 고문을 임명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캐나다 - 교정과 조건부 석방법(1992)

- 82 (1) 교정청은 국가 원주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각 지역별 원주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자문 위원회는 원주민 범법자들에 대한 교정 업무에 대해 교정청에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위원회들은 원주민 사회나 원주민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적절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체제

교도소 이용의 증가

교도소 조직은 교도소에 보내어지는 사람들의 수를 관리하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용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증가는 어떤 특정한 사법권의 관할 지역이나 정치 제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증가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수가 1980년에 50만 명 미만이던 것이 오늘날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했다. 타이의 수용자 수는 1992년의 7만 3,000명에서 2002년에는 25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서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국가들에서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 교도소 수용 비율은 국가들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미국은 수용자의 비율이 인구 10만 명 당 약 700명 꼴이다. 다른 국가들은 그 보다 훨씬 낮아서 인도는 10만 명 당 28명, 인도네시아는 29명, 아이슬란드는 38명,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모두 59명 꼴이다.¹⁾ 어떤 국가들에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을 교도소에 수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국가들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다수의 범법자들을 교도소에 수용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는 정신병에 걸린 남녀, 물질 남용자(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 심지어는 아동이나 소년까지도 포함된다.

만연하는 과밀화 현상

대부분의 교도 행정 기관들은 이러한 증가하는 수용자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할당할 능력이 없었다. 그 결과 전반적인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들은 구금된 사람들을 돌볼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을 교화 개선하고 수용자들을 사회 복귀에 대비시킨다는 주요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용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교도 행정 당국의 능력도 저하되고 있다.

교도 행정 기관의 관심

이와 같이 교도 행정 기관들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도소로 보내어지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 동안 수용될 것인지, 교도소들이 그곳에 구금되도록 보내어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 기관들은 조기 석방을 통해 수용자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의 도입에 대해 관심이 있고 형의 선고 단계에서 교도소 수용 대신 선고될 수 있는 다른 대안에 대해 관심이 있다.

교도 행정 기관들도 임무가 있다

1) 세계 교도소 개요,
ICPS 웹사이트:
www.prisonstudies.org

교도 행정 당국의 핵심 업무는 교도소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과도하게 수용되지 않도록 하고 재판 전 구금자와 유죄 선고를 받는 시점의 수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교도 행정 당국의 중요한 임무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교도소 과밀화 현상의 결과와 다수의 수용자들을 보살필 자원의

결핍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국민과 의회의 관심을唤起시킬 수가 있다. 어떤 국가들이나 주에서는 동일한 부서가 교도소에 대한 책임과 교도소 수용 이외의 제재 조치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국가들로는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호주의 대부분의 주(州)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최고위 당국자들이 교도소 업무와 교도소 수용 이외의 제재 조치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교도소의 수용 상황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교도소 수용 이외의 조치에 대한 업무와 상황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고 후의 재량

수용자들의 초기 석방

구금의 대안들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재판 절차를 밟는 대신 이용되거나 재판과 선고 단계에서, 또는 선고 후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다. 선고 후 단계의 대안은 교도 행정 기관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의 본질적 목적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교화 개선시키는 것이어야 한다(10조 3항)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금 과정은 수용자들을 형기 중 가능한 한 조속히 사회로 안전하게 석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교도 행정 기관은 선고 후 재량권을 발동하는 방법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금 조치가 아닌 조치에서도 교도 행정 기관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조기 석방에 대한 시민의 수용

형기의 후기에 지역사회에 의존하는 비구금적 제재 조치로 전환시켜 석방하는 방법을 활용하려면 시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사회 기관의 능동적 참여도 있어야 한다. 사회 기관들과 교도소 당국간에도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토쿄 규칙), 규칙 2

- 2 (1) 본 규칙의 관련 조항들은 형사 재판을 시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기소, 재판,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3) 해당 범죄의 성격과 중요성, 범법자의 성격과 배경, 사회의 보호 등에 걸맞게 보다 큰 신축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구금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형사 재판 기관은 재판 전 처분에서 선고 후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비구금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비구금적 조치의 수와 유형은 일관성 있는 선고를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토쿄 규칙), 규칙 9

- 9 (1) 관할 당국은 교정 시설에 수감하는 것을 피하고 범법자들이 초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선고 후에 다양한 종류의 대안들을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선고 후의 대안들로는 (a) 휴가와 중간 시설 이용, (b) 작업이나 교육으로 인한 석방 (c) 여러 형태의 가석방 (d) 형기 단축, (e) 특사 등이 있을 수 있다.
- (3) 특사의 경우를 제외한 선고 후 대안에 대한 결정은 해당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법 당국이나 다른 독립 관할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4) 비구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석방도 가능한 한 초기에 검토되어야 한다.

비구금형의 선고

이 지침서의 목적은 교도소 관리에 특히 관련된 인권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구금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선고는 교도 행정 기관의 책임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고가 교도소 수용자의 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교도소 당국은 그러한 선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대성이 낮은 범법자들에게 수감형 이외의 형이 선고된다면 교도 행정 기관의 자원은 구금 이외의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자유의 박탈은 최후 수단으로서의 제재나 조치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다른 어떤 제재나 조치도 부적절함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2 교정 시설의 확장이 과밀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은 예외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면에서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충분할 수도 있지만 각 지역의 필요성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료 위원회가 교도소 과밀화와 교도소 인구의 팽창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보낸 유럽 이사회 각료 위원회 권장 사항 No. R (99) 22

부 록

실천 방법

토론에 대한 기여

구금 이외의 대안들에 대한 발달된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법 관할 지역들에서는 교도 행정 기관은 대안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대안적 선고에 대한 새로운 법의 입법에 대한 토론에서 교도소 당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할 수가 있다

- 기존의 처벌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
- 교도소 조직이 다루고 있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정보
-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구금 이외의 처벌에 요구되는 조건들에 순응할 가능성에 대한 사정
- 범법자의 감독에 대한 전문 지식

나미비아 교정부는 새천년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전 세계의 형사 행정 당국은 수감형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수용적 제재 조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교도소의 과밀 현상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단기형을 선고받은 범법자들을 교도소에 보낼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 경범죄를 저지른 엄청난 숫자의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명령을 통해 그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사람들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듈다. 지역 사회 봉사 명령을 적절하게 잘 관리한다면 교도소 관련 문제들이 다음과 같이 향상될 것이다.

■ 과밀화의 완화, 교도소 예산의 축소, 범법자들의 교화 개선과 사회 재통합의 촉진과 강화 등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려면 교정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므로 직원과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²⁾

카자흐스탄에서는 교도 행정 기관이 상원 특별 조사 위원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그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위원회는 카자흐스탄에서 형이 선고되는 과정을 조사하고 외국에서 선고되는 수감형의 대안들을 시찰하기 위해 외국을 방문한 후 변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수감형은 최후의 수단

입법부, 사법부, 국민에게 교도소는 다른 어떤 합당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교도 행정 기관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감형의 대안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 집무실, 10년 간의 평화와 민주주의와 번영 1990-2000

관련 인권 문서 목록 국제적 인권 선언

- 세계 인권 선언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고문 금지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차별 방지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종교나 신앙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대한 선언
- 국가·민족·종교·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선언

여성의 권리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 선언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법의 집행

-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UN 규칙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수용자와 피구금자를 고문 및 그 밖의 잔虐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건강관리 요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무리적 원칙
- 사형에 직면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규약

색인

ㄱ

가족 거주지와의 근접성	112	유자격 간호사의 역할	46 ~ 7
가족 접견	112, 114	건강 관리	57 ~ 68
가족과의 접촉	79, 111	무료 건강 관리	61
노령 수용자	161	여성 수용자의 건강 관리	154
소년 수용자	148	일차 검진	61
장기 수용자	160	전문의의 진찰	61
'여성 수용자의 자녀' 참조		진료권	58 ~ 62
가족의 요구와 불평	121	건설적 활동	95 ~ 109
가치	15 ~ 7	건설적 활동을 제공할 책임	95
간염	58	결핵	58
간호사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간호사에 대한 지원	68	9	
간호사에 의한 검진	46	경찰과 교도소의 분리	19, 20
감각의 차단	93	계층 조직적 구조	21
감방		고문	
감방에서 보내는 시간	51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	125
독방과 공동 감방	52	고문에 대한 고소	42
어두운 감방	93	고문의 문서화	68
'독방 수용' 참조		고문의 금지	39, 175
감사 절차	127 ~ 32	고문 및 비인도적 · 굴욕적 대우나 처벌	
감사에 대한 보고와 대응	132	방지 위원회	10
독립 단체의 감사	128, 131	고문 및 비인도적 ·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무제한적 접근권	131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	10
외부 감사	127	외부 세계와의 접촉 관련 조항	79
정부 절차의 준수	130 ~ 1	고문에 대한 특별 보고자(UN)	128
좋은 관행의 발굴	131	고문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미주 국가간	
중대 사고에 대한 감사	132	협약	83
지역적 감사 기구	128 ~ 9	고위 직원	30
행정에 대한 감사	128	곤봉의 사용	41
감시		곤봉의 사용	41
독립적 일반 시민 단체의 감시	128, 130	공개 접견	115
미결 수용자에 대한 감시	135	공공 보건 기관과의 연계	60
전화에 대한 감시	117 ~ 8	공식 협의	169 ~ 70
차별에 대한 감시	169	공적인 감시	127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공정한 처우	167
위한 선언	43	과밀 수용	51, 171
외부 세계와의 접촉	78	과밀 수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57
입소 절차	43	관리상 이유로 수용된 사람들	141
건강 검진	46	교도 행정 기관	171 ~ 2
		교도소 수용	159
		교도소 업무의 공무로서의 성격	13

-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 법집행관의 힘과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 변호사의 임무에 대한 기본 원칙
- 검사의 임무에 대한 지침
-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토쿄 규칙)
-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UN 지침 (리야드 지침)
-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 (베이징 규칙)
- 범죄와 권력의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기본 원칙 선언
-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 형사 사건 절차의 이관에 관한 모형 조약
- 조건부 선고를 받았거나 조건부로 석방된 범법자들에 대한 감독권의 이관에 관한 모형 조약
-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언
- 법의 · 임의 · 약식 처형의 효과적 예방과 수사에 관한 원칙

지역별 인권 문서

-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
-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
- 미주 인권 협약
- 고문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미주 국가간 협약
- 유럽 인권 협약
- 고문 및 비인도적 ·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
- 유럽 교도소 규정

교도소 이용의 증가	171	대중 교육	15, 23 ~ 4
교도소 환경 '보건 환경' 참조		대중의 인식	19
교도소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권	131	대화	83
교도소의 민주적 관리	20	독립 단체의 감사	128, 131
교도소의 전문 직원		독립적 감시자	42
전문 직원에 대한 교육	30 ~ 1	외부 접촉의 구성 요소로서의 독립적	
전문 직원의 채용	24	감시자	79
채용		'감사 절차' 참조	
교도소의 제복	52	독방 수용	73, 93
교육과 문화적 활동	103 ~ 6	독방 수용의 위험	94
교육 · 문화 활동의 중요성	105	중구금 보안과 독방 수용	94
균형 잡힌 프로그램	106	독서 자료	113, 118 ~ 9
장기 수용자의 교육 · 문화 활동	160	돌봄 의무	48 ~ 9
재능의 활용	196	동등한 기회	22 ~ 33
전인적 발전	105		
지역사회와의 지원	106		
국제 간호사 회의	68		
국제적 감시 단체	10		
국제적 기준	9	라디오	113, 118 ~ 9
국제적 인권 선언	175	러시아 마가단의 단기 수용소	35 ~ 6
권리의 상실	36		
귀휴	112		
규율 위반 사건의 심리			
심리 관찰 당국	89		
항변에 대한 준비	89	매일 점검	93
항소권	89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규칙과 규정	70	협약	168
그리스 코리달로스 교도소	36	무기 41, 84, '화기' 참조	
급료 수준	32	무력	
		무력 사용에 대한 교육	31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제	41
		최소한의 무력 사용	41, 83
		최후의 수단	71
L			
노령 수용자	161	무력과 화기의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10
가족과의 접촉	161	직원 교육	27 ~ 8
		질서의 붕괴	82 ~ 3
		무질서의 예방	25
		문맹 수용자	47
		문제 수용자(다루기 힘들거나 파괴적인)	
		수용자)	40, 85 ~ 6
C		물리적 억제 도구	77
다양성에 대한 인식	167 ~ 70	물리적 억제 도구의 사용에 대한 허가	77
단기간의 석방	108 ~ 9	처벌 수단으로서의 물리적 억제 도구	92
단기형을 선고받은 수용자	98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물리적 억제 도구	77
석방에 대한 준비	108		
다시 트잭	68		

미결 수용자	133 ~ 41	과도한 보안	70
공판 전 구금 시간에 대한 검토	135 ~ 6	교도소 밖에서의 보안	77
관리	138 ~ 40	물리적 보안	74
기록	45	미결 수용자에 대한 보안	74, 140
다른 신분	139	보안 등급에 대한 사정	70
무죄라는 가정	133	보안 절차	74 ~ 5
미결 수용자들의 수	134	보안 조치의 등급	72 ~ 3
법적 대리인과 접견할 때의 프라이버시	138	보안 조치의 여러 등급	73, 74
	138	보안과 사회 재통합	71 ~ 8
법적 서신 왕래의 프라이버시	138	보안에 대한 정기적 검토	74
법적 조언	136, 136 ~ 8	여성 수용자에 대한 보안	152
보안	74	역동적 보안	76
보안 수준	140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보안	78 ~ 9
유죄 선고를 받은 수용자들로부터의 격리	140	부부 접견	115
	140	부적절한 직원 채용의 위험성	16
임의 구금	135	부정기적 형기	158
작업과 기술 교육	103	부족한 물자	49
접견 제도	115	불법 이민	141
민간 업무	19	불평 '요구와 불평' 참조	
		비공식적 경고	90
		비구금 조치	172 ~ 4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UN 최저 기준	
		규칙(토교 규칙)	172 ~ 3
		비밀 보장	65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존중	109	▶	
범죄 행위	125	사명의 선언	18
범외 · 임의 · 약식 처형의 효과적 예방과		사생활 보장	65
수사에 관한 원칙	43	사생활 · 가족 · 가정 · 서신을 존중받고	
법의 집행	175 ~ 6	명예와 평판을 보호받을 권리	47
법적 조언		▶	
미결 수용자에 대한 법적 조언		사형	
	136, 136 ~ 7	사형 선고 건수의 감소	163
사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 대한 법적		사형에 대한 의사의 관여의 금지	68
조언	165	사형 폐지의 영향	157
법집행관의 행동 규약	9, 16	사형에 직면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고문	40	보장하는 UN 규약	164
직원 교육	27	사형을 선고받은 수용자	163 ~ 5
직원 채용	22	변호사와 접촉할 권리	165
베이징 규칙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UN		사형수에 대한 배려	
최저 기준 규칙' 참조		동등한 처우	165
변호사의 임무에 대한 기본 원칙	137	사형수의 격리	164
변호인과의 접촉	79, 118, 165	예의바르고 인도적인 처우	164
병원에서의 치료	62		
보건 환경	62 ~ 4		
보안	69		

접견인	165	수색	
직원 선정	165	수색 절차	75
사회 기관들과의 연계	21	수용자에 대한 수색	75
사회 재통합	71 ~ 8, 95 ~ 109, 169	여성 수용자	155
생활 공간		접견인에 대한 수색	75 ~ 6
생활 환경	48 ~ 55	직원에 대한 수색	76
샤워 시설	53	수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49 ~ 51
서신 왕래	113	수용자 종의 밀고자	76 ~ 7
서신 검열	117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9, 37
외국인 수용자의 서신 왕래	120	건강 관리	58
서신의 검열	117	교육	104
석방과 사회 재통합		독방 수용	92
석방에 대한 준비	107 ~ 9	사회 재통합	71
소년 수용자	148	석방에 대한 준비	107
여성 수용자의 석방 준비	155	작업과 기술 교육	99
석방에 대한 준비	107 ~ 9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최저	
단기간의 석방	108 ~ 9	'기준 규칙' 참조	
단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	108	수용자들에 대한 개별적 치료	64 ~ 8
장기형을 복역하는 수용자	108	수용자들의 개별성	97 ~ 8
특별 프로그램	108	수용자들의 건강상의 문제점	57
선고 후의 재량	172	수용자들의 상태의 악화	95
세계 인권 선언	36	수용자들의 실질적 고립	85, 86
가족과의 접촉	111	수용자들의 의복	52
고문	39	수용자에 대한 성적 학대	41
교육	104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47
미결 수용자	134	수용자와 피구금자를 고문 및 그 밖의	
수용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	167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여성 수용자	132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건강 관리	
종교	55	요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소년 사법의 운영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9, 145 ~ 6	의(醫)윤리적 원칙	9 ~ 10
소년 수용자	146	건강 관리	59
구금의 적법성	143 ~ 4	직원 교육	28
국제법상의 입장	143	수용자의 개인적 발전	98
복지와 교육의 필요성	146 ~ 7	수용자의 사회적 교화 개선	96
복지와 교육의 필요성	147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부모와의 접촉	112	9, 16, 37	
석방과 사회 재통합	148	가족과의 접촉	111
소년 수용자를 대하는 직원의 기술		미결 수용자	134 ~ 5
외부 세계와의 접촉	147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	163 ~ 4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교도소 수용	143	사회 재통합	95
출생 기록부의 부재	144	수용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	167
학대를 받기 쉬움	146 ~ 7	여성 수용자	150
소년과 아동 수용자	143 ~ 8	요구와 불평	122

작업과 기술 교육	98 ~ 9	교도소에서 성장하는 아동	154
제2차 의정서	163	아동을 격리시킬 나이	154
종교	55	아동을 맡길 곳	154
신체 수색	68	어머니와의 관계	112, 153
		여성 차별 철폐 선언	2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협약	23
		여성의 권리	175
아동의 권리	175	여자 교도소	154 ~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4	영사 관계에 대한 빈 협정	
아데네 선서	66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관한 규정	
안전	69 ~ 70	119 ~ 20	
어두운 감방	93	입소 절차에 관한 규정	
어떤 형태로든 구금이나 수감 상태에 있는		외국어로 된 정기 간행물	120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	9, 37	외국인 수용자	45, 46
건강 관리	59	서신	120
고문	40	외부와의 접촉	113, 119 ~ 20
미결 수용자	136 ~ 7, 139	전화	120
수용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	168	지역사회와의 접촉	119 ~ 20
여성 수용자	151	차별	169
외부 세계와의 접촉	78 ~ 9, 113	외부 세계와의 접촉	78 ~ 9, 111 ~ 20
요구와 불평	122	가족과의 접촉	79, 111
입소 절차	44	변호인과의 접촉	79
징계 절차	88	소년 수용자의 경우	146, 147
여성 교도관	24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113, 119 ~ 20
여성 수용자	149 ~ 55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보안	78 ~ 9
가족에 대한 책임	149	장기 수용자의 경우	161
건강 관리	154	'가족 접견' 참조	
마약 퇴치법	149	요구와 불평	121 ~ 5
보안	152	가족과 법적 대리인의 불평	121
부양 친척	154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	125
석방 준비	155	법적 절차에 대한 불평	125
수색	155	불평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123
시설	152	유아를 대동한 어머니	153
		불평을 제기하는 절차	121, 123
임신한 여성	150, 153	불평의 비공식적 해결	124
자녀와의 접촉	112, 153	불평의 제기에 대한 장애의 제거	123
자녀의 출생	153	신속한 해결	124
작업과 기술 교육	101	외부의 독립 절차에 불평을 제기하기	124
차별	152	집단 불평	125
특별 보호	47	징계 결정에 대한 불평	125
학대의 방지	150	해결을 위한 공식적 절차	124
활동에 대한 등등한 권리	153	우간다 교정청의 정책 선언서	18
여성 수용자의 자녀		운동	

국외 운동	54
위험도에 대한 사정	73
유럽 경찰 윤리 규약	19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	46
유럽 교도소 규정	10
독방 수용	93
사회 재통합	72
석방에 대한 준비	107
징계 절차	88
처벌	91
유럽 인권 법원	35, 36
유럽 인권 협약	35
유효한 명령서	45
윤리적 문제	
교도소 관리의 윤리적 근거	13
보건 전문가의 윤리	66 ~ 7
음식과 마실 물	53 ~ 4
의무 직원	66 ~ 8
의사	
처벌상의 역할	92
‘의무 직원’ 참조	
의사 전달	15 ~ 6
인간으로서의 수용자	35
인간의 존엄성	15, 35 ~ 7
인권	11, 35
인권의 보호	38
인권 문서	175 ~ 6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10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	10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현장	10, 37
처벌에 관한 조항	91
인도주의적 차원	38 ~ 56
인터넷	119
일반 사회의 조직	96 ~ 7
임신한 여성 수용자	150, 153
임의 구금	135
임소 절차	42 ~ 8
다수의 수용자들의 임소 절차	48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임소 절차	42
임소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48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UN 규칙	29, 143
작업과 기술 교육	98 ~ 103
일과의 개발	101
기술의 개발	101
작업을 찾는 방법	101 ~ 2
장기 수용자의 작업	160
작업에 대한 보수	102 ~ 3
미결 수용자의 작업	103
안전한 작업 환경	103
노동의 가치	100
작업 환경	100 ~ 1
장기 수용자	157 ~ 61
검토	160 ~ 1
기회의 제공	159
보안 수준이 낮은 교도소로의 이송	161
석방에 대한 준비	107 ~ 8
선고 후의 첫 단계 계획	159
외부와 가족과의 접촉	160
위험도 사정	160
위험성	158
작업과 교육	160
정의	157
증가	157
체계적인 발전	160
장애인 수용자	47
적극적인 채용 정책	23
전염병	58, 63 ~ 4
전염병에 대한 직원 교육	64
전인적 발전	105
전자 우편	118
전화	113, 117
외국인 수용자의 전화 이용	120
전화의 감시와 녹음	117 ~ 8
접견	113
가족 접견	112, 114
공개 접견	115
부부 접견	115
자원 봉사자의 접견	116
폐쇄된 접견, 또는 접촉이 불가능한 접견	
116	

大

접견인		화기의 사용에 대한 교육	32
사형 선고를 받은 수용자의 접견인	165	직원 대표 기관	34
접견인에 대한 대우	113	직원 채용	21 ~ 4
접견인에 대한 수색	75 ~ 6, 115	대중 교육 프로그램	23 ~ 4
정신 질환	64	여성 직원	24
정의(正義)	69, 89	적극적인 채용 정책	23
정치적 망명자	141	적절한 지원자의 선발	21 ~ 2
제약의 최소화	80	전문 직원의 채용	24
조기 석방	172	차별 없는 선발	22
조기 석방에 대한 시민의 수용	172	‘직원 채용의 조건’ 참조	
‘석방을 위한 준비’ 참조		직원 채용의 조건	32 ~ 4
종교	55 ~ 6	급료 수준	32 ~ 3
종교적 계율의 준수	56	동등한 대우	33
총신 수용자	157	전근	33 ~ 4
중구금 보안	73, 84	직원 대표 기관	34
독방 수용과 중구금 보안	94	직원과 수용자의 관계	13
지도력	13 ~ 4	직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	25
지역적 감사 기구	128 ~ 9	직원의 전근	33 ~ 4
지역적 기준	10	진료 기록	65
직원		진찰 받기	65
개인적 성실성	14	질병 말기의 수용자	66
개인적 자질	16	질서의 붕괴	81 ~ 4
고립의 위험성	14	예방	83
고위 직원	30	질서의 유지	80 ~ 1
여성 직원	24	집단 격리	86
여자 교도소의 직원	154 ~ 5	집단 불평	125
역할	14	징계 절차	87 ~ 94
전문 직원	24, 30 ~ 1	관리 규율의 위반	87
지도력	13 ~ 4	외부 기준	87
지위	14 ~ 5	절차의 공정성	89
직원에 대한 수색	76	절차의 준수	89
직원의 선정	14		
직원 교육	24 ~ 32		
고위 직원의 교육	30		
무력의 사용에 대한 교육	31		
무질서의 예방에 대한 교육	25	차별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육	152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의료 교육	68	협약	168
입소 절차에 대한 교육	48	여성 수용자에 대한 차별	152
전문 직원에 대한 교육	30 ~ 1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차별	169
전염병에 대한 교육	64	직원 채용상의 차별	22
지속적 교육	25, 31	차별에 대한 감시	169
직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	25	차별을 퇴치할 의무	167
초기 교육	30	차별의 위험	167

大

개별적 처벌	91
공정하고 균형 잡힌 처벌	90 ~ 92
물리적 억제	92
비공식적 처벌	92
처벌을 하지 않는 관행의 강화	169
책임 이관의 결과	20
처벌	87 ~ 94
처벌 과정에서 의사가 수행하는 역할	92
처벌에 대한 제한	91
행정적 처벌	91
'독방 수용' 참조	
처형	
처형에 대한 반응	165
'사형' 참조	
최저 기준 규칙	9, 16 ~ 7, 20, 38
개별적 치료	64 ~ 5
개인으로서의 수용자	97
건강 관리	59
교육	104
독방 수용	92 ~ 3
미결 수용자	135, 137, 139
보건 환경	49 ~ 51, 62 ~ 3
사회 재통합	71 ~ 2, 95 ~ 6
석방에 대한 준비	107
수용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	168
여성 수용자	151 ~ 2
외부 세계와의 접촉	114, 118, 120
요구와 불평	122
의무 직원	66
입소 절차	43, 44, 45
작업과 기술 교육	99 ~ 100
재판 없이 구금된 수용자	135
종교	55
직원 교육	25 ~ 7
직원 채용	22
질서의 붕괴	82
질서의 유지	80
징계 절차	88
처벌	88
치료	65
동질의 치료	60
선고 전과 후의 치료	65
환자로서의 수용자	67

III

타협	83
테러리스트 수용자	158 ~ 9
텔레비전	113, 118 ~ 9
토교 규칙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참조	

IV

폐쇄된 접견, 또는 접촉이 불가능한 접견	
피해의 방지	121, 123

V

학대	
성적 학대	41
소년 수용자에 대한 학대	146
여성 수용자에 대한 학대	150
학대에 대한 고소	42
학대의 금지	42
행정에 대한 감사	128
화기	
화기 사용에 대한 교육	32
화기 사용에 대한 지침	84
화상 회의	116
화장실	53

HIV/AIDS	58
UN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 선언	151
UN 최저 기준 규칙 '최저 기준 규칙' 참조	